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 대학평의원회 규정안을 중심으로 -

2014. 1.

충남대학교 교수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대학거버넌스 정책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

연구책임자 : 박재목 (교수회장)

공동연구자 : 오병성 (교수회 부회장)

김세정 (교수회 상임운영위원)

김종성 (교수회 상임운영위원)

박길순 (교수회 상임운영위원)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기성회계의 지원을 받아 교수회 정책연구
과제로 수행되었으나,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수회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사적 견해를 밝혀둡니다.

충남대학교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연구위원회)

< 차 례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장 이론적 배경	3
제1절 대학의 자치	3
1. 국내 선행연구의 경향	3
2. 대학 자치와 국립대학의 한계	6
제2절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8
1. 거버넌스의 의의	9
2. 대학거버넌스	11
제3절 (국립)대학의 의의와 특성	12
1. 대학의 기능	12
2. 국립대학의 법제적 특성	13
3. 국립대학의 조직적 특성	15
4. 국립대학의 구성적 특성	17
제3장 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21
제1절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21
1. 총장	22
2. 학무회의	22
3.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22
4. 대학평의원회	23
제2절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24
제3절 외국대학의 거버넌스	25
1. 미국	25
2. 영국	27
3. 독일	29
4. 프랑스	31
5. 일본	32

제4장 대학 거버넌스의 방향	35
제1절 개설	35
제2절 구성범위와 참여절차	35
1. 구성범위	35
2. 참여절차(대표방식)	39
제3절 권한과 기능	40
1. 의결권 여부	40
2. 심의사항의 범위	41
제4절 조직과 운영	44
1. 기구	44
2. 회의	46
3. 심의 및 재심 절차	49
제5장 충남대학교 대학평의회 규정(안)	51
< 참고문헌 >	55
<부록 1> 강원대학교 평의회 운영규정	59
<부록 2> 부산대학교 대학평의회 규정	69
<부록 3> 서울대학교 평의회 규정	73
<부록 4> 전남대학교 평의회 규정	76
<부록 5> 전남대학교 평의회규정 시행세칙	81
<부록 6> 제주대학교 평의회 규정	83
<부록 7> 충북대학교 평의회 규정	87
<부록 8> 경상대학교 대학평의회 규정	89
<부록 8> 충북대학교 평의회 규정	9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의 출범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로 인하여 정부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정관리의 패러다임이 재정립되고 있다. 즉 통치(govern)와 정부(government)로부터 거버넌스(governance)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배타적·독점적 국가개입의 비효율성이 노정되어 '정부실패'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정부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0세기말부터 국민국가의 권력이 상향적, 하향적, 수평적 이동을 통하여 분화되면서 탈국민국가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Jessop, 1997, 1999; 김석준, 2000: 35에서 재인용),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 지역·지방·도시,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연계와 파트너십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거버넌스가 국가의 통치구조차원으로부터 인식구조차원으로까지 확산되어, 참여와 소통, 합의와 협력이라는 집단 의사결정과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한편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인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76병합).

대학의 자치는 대학운영 일반에 있어서 대학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결정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인사, 학사, 관리운영 및 재정 등에서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배원, 2007: 330).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자율성'에 관한 문제로서, 주로 대학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립성'에 관한 문제로서, 대학이 외부(특히 정부)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든 규범(학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이다(배영길, 2005: 379).

특히 국립대학은 정부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국립대학은 정부조직법 제4조의 부속기관의 일종인 교육훈련기관으

로서 ‘공법상의 영조물(Anstalt)’로 보고 있으며(1991.11.22. 91누 2144; 1992.7.14. 91누 4737; 헌재결 1992. 10. 1. 헌마 68, 76 병합), 부속기관은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즉 국립대학은 행정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및 국립학교설치령,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직·인사·재정에 있어서 엄격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 국립대학의 총장은 소속 대학의 장으로서 독립제 관청이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국립학교설치령 제5조 제2항). 따라서 국립대학의 모든 권한은 총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소속기관으로서 교육부의 감독을 받을 뿐, 내부적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

각 대학에서는 그동안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해당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방식”을 채택하여 총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하였으나, 2012년부터 교육부의 재정적 압력에 따라 직선제를 포기하였다. 총장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장치였던 직선제를 포기함에 따라,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체적 견제기구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중립적·합리적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주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범위와 참여절차 및 참여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일환으로서의 대학평의회제도에 대하여, 국립대학으로서의 충남대학교의 주된 의사결정과정과 구조를 분석하여 대학평의회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충남대학교 대학평의회 설치에 필요한 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대학의 자치

1. 국내 선행연구의 경향

대학의 자치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아래 <표 2-1>과 같이 주로 헌법적 측면에서 논의하였고, 유럽국가와의 비교연구가 주된 경향이였다. 또한 학생자치와 참여권리에 관한 연구도 일부 등장하고 있다.

<표 2-1> 1970-80년대 연구경향

한상범(1970). 대학의 자치와 학생의 지위. <사법행정> 제11권. 14-17.
권영찬(1971). 교육정책의 결정에 관한 Seminar: 대학의 자율성. <한국행정학보> 제5권. 31-67.
구병삭(1974).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1). <사법행정> 제15권 제12호. 12-16
구병삭(1975).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사법행정> 제16권 제1호. 17-21.
조규린(1979).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법학연구> 제6권. 125-142.
조규린(1984). 대학자치의 비교사적 연구-중세. <법학연구> 제11권. 33-49.
조규린(1986). 대학자치의 헌법적보장. <법학연구> 제13권. 17-36.
조규린(1987). 대학자치의 역사적전개-독일의 경우. <법학연구> 제14권. 37-56.
황원영(1989). Max Weber에게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제27권 제1호. 147-161.

1990년대에는 대학의 교육정책 및 입시정책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자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다만 미시적 운영측면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에 그칠 뿐이며,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직접적 참여에 관한 요구는 거의 없다.

<표 2-2> 1990년대 연구경향

주삼환(1990).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와 구성원의 참여. <교육연구논총> 제 12권 제1호. 83-110.

주삼환·김종석·강상철(1990). 대학교육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 (1)-(3). <교육연구논총> 제11권 제1호. 139-282.

강상철·김종석·주삼환(1991). 대학의 학생자치와 참여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제18권 제1호. 203-349.

김명환(1993). 대학조직의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제5권 제1호. 137-158.

조석훈(1998). 대학의 자치와 학생의 권리. <교육법학연구> 제10권. 105-126.

배동인(1998). 대학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 진단: 한 조직사회학적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7권. 254-271.

2000년대에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대학의 법인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기부터 법인화와 관련하여 학내 거버넌스(지배구조 또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대학의 자치와 관련하여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에 관한 연구가 일부 등장하였다.

<표 2-3> 2000년대 연구경향

이주호·박정수(2000).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의제. <한국행정학보> 제 34권 제4호. 139-154.

이시원(2002). 일본의 대학개혁의 방향- 국립대학 지배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369-388.

나민주(2002).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근원적 문제. <고등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1-21.

한용진(2004). 대학의 개혁-누가 변화를 두려워하라: 일본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동향. <아시아문화> 제20권. 29-56.

이경운(2004). 대학의 법적 지위와 국립대학의 법인화. <교육법학연구> 제 16권 제2호. 163-184.

이향철(2005).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조류 및 국립대학의 법인화. <동방학지> 제132권. 159-220.

박재운(2005). 국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보고서.

배영길(2005).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377-408.

이병식(2005). 국립대학의 구조개혁(통합) 계획에 대한 대학혁신 자문팀의 분석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이향철(2005).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조류 및 국립대학의 법인화. <동방학지> 제132권. 159-220.

임재홍(2005).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민주법학> 제27권. 40-67.

김종희·김대식(2006). 국공립대학의 법인화과정에 따른 법제도의 문제. <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17-40.

박정훈(2006).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헌법상 실질적 법인격화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427-444.

박정수(2006).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6권. 21-48.

홍덕률(2006).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현황과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0권. 217-242.

신평(2007). 일본의 경험에 비춰본 한국 국립대학법인화 작업의 평가.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2호. 63-100.

성낙인(2007). 대학의 자치(자율)와 국립대학 총장선거.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129-159.

김지수(2007).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교육비평> 제22권. 9-28.

이데히로토(2006).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나가사키대학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제17권. 165-179.

채형복(2007). 프랑스의 대학 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2호. 339-372.

이성로(2007). 국립대 법인화: 공교육 포기인가, 국가경쟁력 강화인가?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22.

김기수(2008).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개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정은(2008). 일본 국립대학법인화 배경의 정치학적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14권 제1호. 153-180.

전영한,한승준,오재록(2008). 선진국의 국립대학 개혁현황과 우리나라의 국

립대학 법인화 추진방안.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1-26.
 홍기원(2008). 프랑스 국립대학교의 법적 성격과 그 운영. <법과 사회> 제 35권. 307-353.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다소 줄어들면서, 대학 거버넌스와 총장선출제도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2-4> 2010년대 연구경향

명재진(2010).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 1-30.
 이시원·명성준(2010).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3호. 381-409.
 황홍규(2010). 대학의 법적 거버넌스에 관한 비교 연구-일본,미국,독일 및 영국.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199-234.
 이필남(2011). 일본·싱가포르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변기용·강현선·권소연(2011). 국립대학 학내 거버넌스의 변천과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1호. 121-155.
 배 현(2011). 공공성의 위기: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안. <교육비평> 제29권. 10-38.
 이영환·김신복(2011). 선진국 주요 국공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 비교분석. <행정논총> 제49권 제3호. 223-250.
 안세근·김현욱(2012).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고찰.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233-251.

2. 대학 자치와 국립대학의 한계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헌법차원에서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에 부여된 특권으로 판시하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

으로서의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 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재 1992.10.1. 92헌마68; 1998.7.16. 96헌바33; 2001.2.22. 99헌마613; 2006.4.27. 2005헌마1119 등)

판례와 같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대학의 자치의 범위와 관련하여 인사, 학사, 질서, 재정, 시설 등 대학운영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고 보고 있다(황홍규, 2010: 20). 양건(2009: 427-428)은 '무엇에 관한 자치인가' 등과 관련하여 교수 임명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교과과정 편성 등 연구와 교육의 행정에 관한 사항, 대학시설의 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들고 있다. 장영수(2009: 715)는 대학자치행정의 핵심요소로 인사권, 기구편성권, 학과의 증설 및 폐지권, 학생정원의 증감권, 학생선발권 등을 들고 있다. 정종섭(2009: 572)은 대학의 자유의 영역에는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차이가 없다고 한다. 신정철(2007: 243-269)은 조사결과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 자율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 즉 대학 입시의 자율성을 들고 있으며,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을 뽑아 교육시키는 것은 대학의 고유권한이므로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 자율화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학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1965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대학협회 제4차 총회에서는 인사, 학생선발, 교육과정 결정, 연구계획의 결정, 자원배분의 자치를 채택하여 논의한 바 있다고 한다(조규

린, 1986: 21).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황홍규, 2010: 27). 첫째, 대학의 자율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약될 수 있다. 둘째,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즉, 법률이 정하는 범위로 자율의 내용이 제약될 수 있다. 셋째,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 급학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

또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준하는 통제로 말미암아 조직개편, 교수와 직원의 정원 및 인사관리, 보수관리, 국유재산운영, 예산운영, 수입대체경비사용, 입학 및 학사관리, 교직원 복무관리 등에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현재의 충남대학교는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직원을 한 명 채용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하여 공무원 채용규정에 맞춰야 하며, 조교 정원 한 명을 늘리는 것이 실제로는 교수 정원 한 명을 늘리는 것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예산 역시 국가재정법과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당초 교과부가 지정한 항목에 맞춰 사용해야 하고, 교직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며, 수익사업을 하면 수익금은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

대학 내의 의사결정기구에 있어서도 대학의 자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이 학칙제정권, 교무통할권 등을 총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학칙의 최종 의결권을 교수회가 가지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학칙 내용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3.06.26, 2002헌마337).

제2절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의의

거버넌스는 세계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 및 지방주의를 조화시키면서 각 수준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이 서로 새롭게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로 인해 거버넌스는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차원성과 다접근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김석준 외, 2000: 20).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Peters, 1995; 고숙희 외 공역, 1998; 정용덕, 2001: 726-733에서 재인용). 첫째는 “최소국가(the minimal state)”의 의미이다. 공공개입의 범위와 형태를 재정의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시장과 준시장을 활용하려는 것이다(Rhodes, 1996). 둘째는 “기업적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의 의미이다(Rhodes, 1996). 일반적인 의미로 기업적 거버넌스는 회사의 최고관리자들이 주주 및 기타 관심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성, 감독, 평가, 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Starkey, 1995). 셋째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의미이다(Rhodes, 1996). 이것은 사부문의 경영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관리주의(managerialism)와, 시장경쟁과 같은 유인체계를 공공서비스 제공에 도입하려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을 함축하고 있다. 넷째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사용하고 있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의미이다. 좋은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무원단, 독립적인 사법체계 및 계약 집행을 위한 법률 구조, 책임성 있는 공공기금 관리, 대의제적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독립적 공공감사기구,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법과 인권을 존중하며, 다원주의적인 제도적 구조와 출판의 자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는 “사회적 인공지능체계(socio-cybernetic systems)”의 의미이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사회정치체계에서 하나의 모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노력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출현하는 유형 혹은 구조를 의미한다. 여섯째는 “자기조직화 연결망(self-organizing networks)” 혹은 “자기조직적인 조직간 연결망(self-organizing interorganizational networks)”의 의미이다. 신뢰와 상호조정, 경쟁에 뿌리를 둔 관리의 강조, 자율성의 강조, 중앙 지도에 대한 거부 등을 포함한다.

김석준 외(2000: 51)는 거버넌스 개념의 다차원성을 아래 <표 2-5>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2-5> 거버넌스 개념의 다차원성: 주체, 기능별 수준

국가 (체계)	메타 거버넌스	인식론적 전환에 기반한 비전 제시 - 공·사/정부·시민사회/지구·지방/ 자율성·책임성간 이분법 극복	인식론적 기반
		제도적 질서와 균형 유지 - 제도 설계, 제도간 연계 및 조정 여건 조성 - 공익(common goods)에 대한 기여	체제기능
	거버넌스	공식적 제도화 영역 - 반응성, 책임성, 효율성의 원칙 - 제도화 과정 - 권력행사과정	정책형성양식 (p o l i c y m a k i n g model)
시민사회 (생활세계)	거버넌스 구성원 (행위자)	비공식적 제도화 영역 - 자발적 참여, 협력의 원칙 - 영향력 행사과정 - 합의도출과정	여론형성양식 (mode of p u b l i c m i n d i n g)
		공동의 이슈화, 공론화	여론 형성 (o p i n i o n m a k i n g)
		소통을 통한 경험과 이해관계 공유	의견 공유
	성찰적 개인	능동적 시민 (a c t i v e c i t i z e n)	

자료: 문순홍·정규호, 2000; 김석준 외, 2000: 51.

최근에는 거버넌스 개념을 제도 혹은 구조의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제 해결과정으로 보고 있다(Keane, 2003; Leach & Percy-Smith, 2001; Pierre, 1999, 2000; 송지광·한상연, 2005: 355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거버넌스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정부는 그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이다. 거버넌스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시장과 시민사회 등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에 기초를 둔 집단적 의사결정의 유동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율성,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파트너십 등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

이처럼 거버넌스를 의사결정절차 또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거버넌스를 “국가 통치담당자들, 기업 및 경제조직들, 시민사회의 행위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노력하면서 상호신뢰를 도모해가는 공동의 문제해결방식 또는 사회적 조정양식”으로 본다(이명석, 2002; 이종원, 2005).

2. 대학거버넌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버넌스를 의사결정과정 내지 절차라고 보는 경우에, 송지광·한상연(2005: 355)은 대학거버넌스를 “대학 수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에 기초를 둔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라고 정의하고 있다. Moses(2006: 1; 황홍규, 2010: 31에서 재인용)는 대학의 거버넌스를 “대학 내에서의 그리고 대학을 위한 의사결정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 세계은행의 John Fielden(2008: 2)은 대학 거버넌스(University Governance)를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기관들과 사람들을 계획하고 지휘하는데 관련된 모든 구조, 과정 및 활동”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Marginson & Considine(2000: 7)은 거버넌스를 넓게는 내적 관계, 외적 관계 그리고 양자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면서, “(대학의) 거버넌스는 대학 내에서 가치의 결정,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 시스템, 대학의 사명과 목적, 권위와 계층제의 패턴, 그리고 하나의 기관으로서 대학과 다른 학문 세계간, 정부·비즈니스 그리고 지역사회할 것 없이 다른 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대학조직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비하여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학은 조직구조상 총장, 이사장, 이사회, 교수, 학생, 직원 등과 같은 다양한 내부집단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복잡한 의사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양자간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외부적 참여의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다.

한편 金子元久(이시원, 2002: 370-371에서 재인용)는 조직 또는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대학의 경영형태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경영형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대학경영의 주체가 기본적으로 누구인가? 즉, 누가 대학을 소유하고 유지·존속의 책임을 맡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그 집행을 위한 조직의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인가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의사결정조직과 총장 및 학장 등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셋째, 재원의 조달과 배분에 관한 것으로 대학이 그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조직 내에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시원은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는 “개별 국립대학이 대학내부의 의사결

정과 집행의 양식에 관한 제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느냐에 관한 제도화되고 관행화된 관리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두 번째 측면인 “의사결정조직과 절차”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제3절 (국립)대학의 의의와 특성

1. 대학의 기능¹⁾

민간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판매하고, 공공기관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조직은 주로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며, 주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조직의 기본적 기능을 기준으로 조직을 분류한 대표적 학자는 T. Parsons와 Katz & Kahn이다.

우선 Parsons(1960; 오석홍, 1999: 94-96에서 재인용)는 사회체제 전체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적응(adaptation), 목표성취(goal attainment), 통합(integration), 체제유지(latency)로 분류하였다. 조직이 주로 어떤 범주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한 바, 교육기관은 체제유지적 조직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학이 수행하는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세 가지 주요한 기능 중에서 교육기능에 한정하였을 경우에만 대학이 체제유지적 조직에 속한다. 연구기능은 사회가 소비하는 지식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생산조직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봉사기능은 사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의 구성부분들이 공존·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통합기능적 조직에 가깝다.

또한 Katz & Kahn(1966; 이창원·최창현, 2003, 39-42에서 재인용)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생산적 또는 경제적 조직은 사회통합의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유지기능적 조직은 사회화(교화) 기능을 수행하며, 적응적 조직은 지식의 창출, 이론의 구성·검증 및 실제 적용을 담당하며, 관리적 또는 정치적 조직은 사회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 이 중에서

1) 이 부분은 김중성(2009: 297-298)을 수정·보완한 것임.

2) 물론 이러한 분류는 매우 추상적이고 한계가 모호하며 유형간 공통점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구조, 조직 내부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을 도출한 후, 이것을 토대로 2차적 분류를 하였다(상세한 것은 이창원·최창현, 2003: 39-42 참조).

학교는 사회화기능을 수행하는 유지기능적 조직으로 분류하였지만, 대학은 적응적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대학을 적응적 조직으로만 분류하는 것은, 대학의 기능을 지식 창출, 즉 연구기능에만 한정하는 것이다. 대학의 교육기능은 직접적 유지기능에 속하며, 사회봉사기능은 간접적·교정적 유지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의 다른 조직들은 대체로 하나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하여, 대학은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각각의 기능은 조직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의 주요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국립대학의 법제적 특성³⁾

현행 국립학교설치령에는 국립대학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 제4조의 부속기관의 일종인 교육훈련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속기관은 법인격 없는 영조물(Anstalt)로 해석되고 있다. 영조물이란 독일의 Mayer(1986: 318; 이봉귀, 2007: 16에서 재인용)가 “공행정주체가 특정한 공적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용(供用)하는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라고 정의한 이래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다.

대학을 영조물로 보는 관념은 다분히 근대 독일대학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독일의 산물이다(황홍규, 2010: 12-13). 프리드리히 대왕의 의지에 따라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가 1794년 공포한 「프로이센 일반국법(Preußisches Allgemeines Landesrecht)」은 제1조 제2항 제12호에서 학교와 대학을 유용한 지식과 학문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수업하기 위한 ‘국가의 시설(Veranstaltungen des Staates)으로 규정하고, 제67조 제2항 제12호에서는 대학에 ‘특권이 부여된 사단’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런 특권이 부여된 ‘국가의 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다. 독일에 있어 대학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1976년 제정된 연방 「대학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 제58조 제1문에서 “대학은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있는 공법상의 사단(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이며 동시에 국가의 시설(staatliche Einrichtungen)이다”고 규정하기까지 계속되었다.⁴⁾

3) 이 부분은 김중성(2012: 57-58)을 수정·보완한 것임.

4)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을 단순한 영조물로만 보는 시각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즉 종전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대학법」 제2조 제1항 제1문은 “제1조 제2항이 규정한 대학들은 공법상의 사단(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이며 동시에 주의 시설(Einrichtungen des Landes)이다”고 규정하였으나, 2006년 개정 법률은 ‘주의 시설’이라는

영조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 설립주체로부터 독립한 특별재산을 형성함으로써 그 임무수행의 확실성을 보장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일반행정작용에 부과하는 법적 규제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문화된 행정기구가 그 전문적 임무를 자주적 경영으로 처리할 필요, 또는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등에서 찾을 수 있다(Breuer, 1986: 225; 이경운, 1996: 17에서 재인용).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국립대학을 '공법상의 영조물'로 보고 있으며, 국립대학과 국립대학 학생과의 관계는 공법상의 영조물관계로서 공법관계라고 판시하고 있다.⁵⁾

이러한 영조물의 개념을 국립대학에 적용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여 보면, 국립대학이라 함은 교직원 등의 인적 요소와 교사(校舍)·교지(校地) 등의 물적 요소가 결합된 통합체이며,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교육을 행하는 공공용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형근, 1993: 51).

영조물의 독립성은 법인격 부여 여하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봉귀, 2007: 17). 영조물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설치주체의 감독을 받지만, 법률상 독립한 행정주체가 된다. 이에 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영조물은 상대적으로 일반 행정조직보다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행정조직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조직상 부속기관의 지위를 갖는 국립대학의 설립은 설치

문구를 삭제하였다. 또한 「작센-안할트주대학법(Hochschul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제54조 제1문도 “대학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권을 가지는 공법상의 사단이다”고, 「작센주대학법(Gesetz über die Hochschulen im Freistaat Sachsen)」 제2조 제1항 역시 “대학은 공법상의 사단이다”고 하여 대학의 법적 지위를 ‘공법상의 사단’으로만 규정한다(황홍규, 2010: 11-12).

5) 대법원은 국립대학을 행정청으로, 국립대학의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의 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 국가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1991.11.22. 91누 2144).” 위와 같은 입장에서 대법원은 학칙이나 학칙시행세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학생징계처분을 위법으로 취소판결(1991.11.22. 91누 2144, 1992.7.14. 91누 4737)하였으며,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제명처분을 너무 가혹하다 하여 위법으로 취소판결(1992.2.25. 89누 2219)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국립대학을 특정한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로 보고 있으며, 국립대학과 국립대학 학생과의 관계는 공법상의 영조물관계로서 공법관계라고 판시하였다(헌재결 1992. 10. 1. 헌마 68, 76 병합).

령 등의 제·개정 에 의하여서만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주요 조직의 변경도 설치령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3. 국립대학의 조직적 특성⁶⁾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등교육법 제19조).

국립대학은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단과대학과 부속시설, 부설 학교를 둘 수 있다. 하부조직은 사무국과 처·실을 두며,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실을 둔다. 처·실·국, 부속시설에 두는 과 및 담당관과 단과대학 행정실의 설치범위는 국립학교설치령 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학은 각 학문분야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Cohen & March(1974: 33-34; 강병운, 2005: 434에서 재인용)는 이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ies)'라고 부른다. 이와 유사하게 Wieck(1976: 1-19; 백정하, 1997: 182에서 재인용)은 교육조직의 독자성을 다른 조직과는 달리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도출하고 있는데, 이를 '이완결합체제(loosely coupled system)'로 개념화하였다. Wieck이 제시한 이완결합개념의 기초는 Bidwell(1965: 976)이 지적한 '구조적 느슨함'에서 출발하였다. 대학조직들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동시에 관료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Owens(1990: 26-28)는 이를 Dual system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국립대학조직은 Mintzberg가 제시한 전문적 관료제모형으로 볼 수 있다. 전문적 관료제모형은 분권화와 표준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조직으로 전문가가 스스로를 통제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표준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형이다. 전문적 관료제는 수평·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형태로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조직구조형태이다. 즉 광범위한 훈련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학습되고 복잡한 절차를 사용하여야 할만큼 환경이 복잡하면서, 표준화된 지식과 기술 및 운영절차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이러한 구조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핵심운영층이 주요 부문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오랜 훈련과 경험으로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과업을 조정하기 때문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는다(Mintzberg, 1979; 이창원·최창현, 2003: 505-507에서 재인용).

6) 이 부분은 김종성(2009: 293-296)을 수정·보완한 것임.

우선 대학의 관료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ladridge, 1983; 백정하, 1997: 180-181에서 재인용). 첫째, 대학은 국가로부터 인정(State Charter)을 받는다. 대학은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복잡한 조직이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학을 통제하려 한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둘째, 대학도 공식적인 계층구조(formal hierarchy)를 가진다. 일단 대학은 학칙에 따라 교수-학과장-(부학장)-단과대학장-총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층구조를 가지는 동시에, 직원-과장-(부처장)-처장-총장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계층구조를 가진다. 셋째, 의사교환의 통로(communication channels)이다.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존중해야 하는 공식적인 의사전달의 통로가 있다. 넷째, 권위관계(authority relations)이다. 대학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하려는 관료들이 갖는 분명한 관료제적 권위관계가 존재한다. 다섯째, 규칙과 규정(rules and regulations)이다. 대학업무의 대부분을 지배, 관리하는 공식적인 정책과 규칙들이 있다. 학칙, 학사운영규정, 도서관규정, 교원임용규정 등은 대학업무를 통제하는 규정과 절차이다. 여섯째, 구성원 관리(people processing)이다. 대학은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수강하며 졸업한다. 교수들은 매학기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고 강의한다. 따라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process)가 있다. 일곱째, 의사결정과정(decision processes)이다. 특히 입학과 졸업과 같은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대부분 공식적인 행정구조에 의해 책임이 부여된 직원들이 위임받아 수행한다.

그러나 대학은 느슨하게 결합되어있는 Dual System이므로, 비관료제적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첫째, 국가의 인정은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진다. 즉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의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계층구조는 특정부문에만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대학의 관리적 측면, 예컨대 예산, 시설, 기자재 관리 등은 총장이 임명하는 관료적 계층구조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단과대학 내지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는 분권화된 수평구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과대학의 학장이나 학과장은 대부분 소속교수들의 자율적 선출에 의하고 있으며, 교수들은 학장이나 학과장을 계층제적 상급기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수평적 동료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대학에는 이외에 학과장-학장-총장 및 과장-처장-총장으로 이어지는 공식적 의사전달의 통로 이외에, 교수회·직원회·학생회가 있다. 교수회는 몇 년전까지 단순한 친목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학칙기구로 전환하면서 그 위상을 높이고 또

다른 공식적 의사전달통로로 역할하고 있다. 또한 직원단체도 공무원노동조합, 직원협의회, 기성회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의사전달통로로 역할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내의 의사전달통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공식적 의사전달통로를 보완하는 동시에 공식적 의사전달통로에 대한 견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대학내에도 권위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수집단 내에서는 공식적 계층구조를 통한 합법적 권위보다는 선임순(seniority rule)에 의한 비공식적 권위관계가 관행적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대학업무를 관리하는 공식적 규칙과 규정(rules and regulations)이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의 주요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며, 교육과 연구의 내용적 측면을 규제하는 규칙과 규정은 대학과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섯째, 대학의 구성원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 내지 규정도 교육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다. 일곱째,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들이 수행하지만, 교육과 연구에 관한 본질적 내용, 예컨대 교과과정이나 전형에 관한 결정은 교수들의 전권이며, 대학의 주요정책방향에 관한 결정도 주로 교수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처럼 대학조직은 관료제적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비관료제적 성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일정 부문은 수직적 계층구조에 의한 집권적 조직구조가 지배하지만, 다른 부문은 수평적 자율성에 의한 분권적 조직구조가 동시에 지배한다. 따라서 대학의 운영은 효율성이 지배적인 행정관리구조와 전문성이 지배적인 수평구조의 이중성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국립대학의 구성적 특성⁷⁾

대학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사회, 정부, 동창회, 지역사회 등 외부집단과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대학을 구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학생,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 직원, 학생집단은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다.

1) 교수

교수는 대학조직의 핵심적 구성원이다. 대학의 기본사명인 교육·연구·사회

⁷⁾ 이 부분은 김종성(2009: 299-301)을 수정·보완한 것임.

봉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이다. 교수가 헌신적 교육과 창의적 연구, 그리고 적극적 사회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력적 기초는 전문적 지식이다. 각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칭하는 교수들은 전문성에 기초한 권력(expert power)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계층적 권력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헌법 제31조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교수들은 집단적 규제와 지시를 기피하며, 개개인이나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교수들은 대학본부의 행정적 권한 행사를 학문과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약으로 간주한다. 또한 모든 교수들은 동등하게 전문적 자율성을 견지하기 때문에 관료제적 계층구조를 부인한다. 학과장, 학장, 총장과 같은 행정기관을 자신의 상급기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대등한 동료나 지원기관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대학의 전체적 목표달성과 통합유지를 저해하기도 하지만, 지식의 생산과 교육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수집단에 대한 관리는 최소한의 행정적 권한 행사만으로 전체적인 통합을 유지하면서 전문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6.4.27. 2005헌마1047, 1048)”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직원

대학에서 행정직원은 교수, 학생과 더불어 대학의 핵심적 집단이다. 행정직원은 입학·수업·졸업과 관련된 학사행정업무, 교직원의 인사·복무관리, 교수연구비 관리, 학교 시설물관리, 예산회계관리, 도서관리, 전산관리 등 교육과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학의 행정직원은 크게 국가공무원인 일반행정직원과 기성회직원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다른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되지만, 동질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질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직과 기성회직의 조직행위는 비교

적 유사한 관료적 특성을 보인다(이상주, 1987: 52). 첫째, 행위의 동기와 역할의 수행은 엄격한 계층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며, 권한과 책임의 위계와 상하간의 명령과 복종관계를 중시한다. 둘째, 행정직원은 조직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관리에 주된 관심을 두기 때문에 행정적 능률성을 기준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셋째, 적법성의 강조로 법규·규정·절차를 중요시한다.

국가공무원인 행정직원에 대하여 대학총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대학본부의 과장 또는 단과대학의 행정실장급인 4·5급 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해 임용되고 빈번한 보직순환으로 인하여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다소 떨어지며, 때로는 대학총장보다는 사무국장에 대하여 강력한 충성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기성회직은 원래 일반행정직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용된 직원들로서 대학 기성회계 재원으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기성회 이사회에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총장이 임용한다. 일반행정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지만, 기성회직은 <표 2-6>과 같이 직종과 직명의 구분만 있고 직급이 없기 때문에 승진이 없으며 호봉승급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승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뿐더러 일반직과의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표 2-6> 기성회직원 직종 및 직명 기구표

직종	직명
1종	통신원, 건축원, 목공원, 전기원, 기계원, 난방원, 기타 이와 유사한 직종
2종	운전원, 정비원, 전산원, 화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직종
3종	사무원, 교환원, 집배원, 사서원, 방호원, 원예원, 영림원, 기타 이와 유사한 직종
4종	위생원, 기타 이와 유사한 직종
5종	예비군연대장, 취업팀장, 홍보팀장, 예비군참모, 프로그래머, 비서실요원, 전임상담원, 보건원 기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직종

3) 학생

대학 내에서 학생의 역할 인식은 대체로 세 가지이다. 첫째는 지식을 배우는 피교육자이고, 둘째는 대학의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며, 셋째는 스스로 대학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한영환, 1987: 20).

학생들은 대학에서 지식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지식을 전수받는 교육서비스의 수혜자 내지 소비자이면서 스스로 대학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업의 고객과 다르다. 물론 최근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통해 소비자도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비자주권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유형, 산업구조, 생산유형 등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소비자단체를 통해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학생들도 학생회를 통해 대학의 운영에 참여하려고 한다. 학칙상 학생회의 설립목적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학생회는 자치활동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활동을 통해 대학행정에 관여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이 기업의 소유권과 동일시될 수 없듯이 학생의 권리는 대학을 소유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서비스를 최대한 향유함으로써 개인적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학생들이 대학의 소유자 내지 주인은 아니더라도, 대학은 고객인 학생들이 충분히 만족하도록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들의 의사를 대학운영에 반영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다만 학생은 고객인 동시에 피교육생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교수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으로서 아직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의 판단이나 대안의 제시가 미숙하고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학생의 참여요구로 인하여 1960년대 대학이 심각한 몸살을 앓아 왔고 마침내 1968년 학원소요사태에까지 이른바 있다(성낙인, 2007: 133). 그 이후 정부에서는 대학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법과 제도로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대학의 3주체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교수 및 연구자에게 우월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총장선거를 비롯한 일련의 대학에서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서 적어도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대학의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할애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3장 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원칙적으로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등이 모든 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근거법이 되며,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근거법이 된다(황홍규, 2010: 311). 또한 국립대학은 당해 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등의 대통령령이, 공립대학은 당해 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사립대학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그리고 모든 대학에 있어 학칙이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이 된다. 한편, 국립대학은 교원과 직원의 인사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을 받고, 조직·재정·회계 등에서는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 법령도 국립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근거법이 될 수 있다.

다만 2009년 3월 1일 국립대학법인으로서는 최초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국립대학과는 다른 국립대학법인이라는 조직형태가 신설되었고, 이어서 2013년에 인천대학교와 서울대학교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법인에 있어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당해 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대학거버넌스의 근거규정이 된다.

제1절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구성요소는 총장, 교무위원회(학처장회의), 단과대학장, 평의원회, 교수회 등이다. 대학의 중심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교수회 또는 평의원회는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칙기재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1. 총장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모든 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및 국립학교설치령 제5조 제2항). 총장은 교원으로서 교육을 직접 담당할 수도 있다(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고, 수업료를 책정·징수하며, 학생을 선발하고, 학위수여증서를 발급하며, 학생을 징계할 권한을 갖는다.

한편, 국·공립대학의 예산, 회계, 재산, 시설, 문서 등의 사무에 있어 총장은 일반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국·공립대학 총장은 이들 사무에 있어서는 독일 국립대학에서의 국가사무 수행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황홍규, 2010: 312).

2. 학무회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무회의(학교에 따라서는 학처장회의, 교무위원회, 교무회의라 불림)에서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성격이 형식상으로만 심의기구이지 실제로는 자문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많다(송지광·한상연, 2005: 358). 이는 교무위원회의 구성원이 학장과 처장 등의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무·학생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총장에 의해 임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사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총장의 직속 집행기구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신현직, 1997: 192).

또한 2011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단과대학장의 임용에 있어서 소속 전임교수들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하지 아니하고, 총장이 직접 지명하는 것으로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하였기 때문에, 학장들이 종전처럼 학처장회의에서 소속 단과대학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의 정책을 전달받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3.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교수회에 관한 법령 연혁을 보면, 1952년 4월 23일 제정 교육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은 대학(초급대학 제외)과 사범대학(2년제 사범대학 제외)은 '교수회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즉, 모든 국·공·사립대학에 교수회를 학칙에 의해 반드시 두도록 하였으며, 다만 그 구성과 운영은 학칙에 완전히 위임하였다. 1953년 4월 18일 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8조 제1항은 국·공립대학의 총장, 부총장, 단과대학학장, 대학원장, 교수 및 부

교수의 임명 제청에 있어 동의권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단과대학이나 전체 대학 단위로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공립대학 교수회는 총장, 교수, 부교수의 임명을 사실상 결정하는 대학 최고의 기구가 되었다. 그러나 1963년 12월 5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수회의 이 같은 권한은 폐지되었다(송지광·한상연, 2005: 354).

현행법상 교수회는 학칙상의 임의기구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학평의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은 대학에 위임하고 있다.

임의기구인 교수회는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총장의 법적 권한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일부 국립대학에서 교수회를 심의·의결기구로 전환하는 학칙개정을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교수회, 대학평의회를 의결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총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대학의 교수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도 “현행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 설치령이 학칙제정권, 교무통할권 등을 총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학칙의 최종 의결권을 교수회가 가지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학칙 내용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3.06.26, 2002헌마337, 2003헌마7·8 병합).

교수평의회의 경우는 몇몇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나 직원대표로 구성된 대학평의회가 정식기구로 설치되어 총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의 심의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실제적인 면에서 그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다(송지광·한상연, 2005: 358). 또한 교수회가 교수평의회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대학도 있으며, 평의회의 구성도 대부분 교수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교수평의회에는 의결권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교수평의회는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학장회의 등의 결과에 대해 통과를 인정해주는 형식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 현실이다.

4. 대학평의회

현행법상 국·공립대학에서 대학평의회는 교수회와 마찬가지로 학칙상의

임의기구이다. 그러나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임의기구가 아닌 필수기구였다. 즉 교육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단과대학 학장, 교수 및 교육에 저명한 인사(학외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는 자로 구성되는 '평의원회'를 국립대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1952년에 제정된 교육법시행령은 평의원수를 15인 내외로 하되 학외자는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대학, 부설기관,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와 폐지,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황홍규, 2010: 316).

그러나 실제 어느 대학에서도 법령에 따른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1980년대 후반 대학민주화 운동 이후 변형된 형태로 이를 구성하는 대학이 늘어나자 1991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교육법은 대학평의원회의 의무적 설치를 모든 국·공립대학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3월 1일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에 의한 임의기구가 되었다.

제2절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구성요소는 이사장, 법인이사회, 총장, 교무위원회(학처장회의), 단과대학장, 교수회 등이다. 대학의 중심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교수회 또는 평의원회는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칙기재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거버넌스 구조상 학교법인(이사장, 이사회) 중심의 운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 주요권한으로 인사, 예산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의장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송지광·한상연, 2005: 360). 따라서 교수회 또는 교수회를 대표하는 교수평의회, 비보직 교수들을 대표하는 교수협의회 등의 내부통제장치가 국립대학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수회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도 교수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며, 외부인사의 참여기회마저 부족함으로써 일부 사학 비리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서는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은 ①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③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④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이 중에서 ③과 ④는 자문사항이다.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사립학교법시행령 제10조의6).

제3절 외국대학의 거버넌스

1. 미국⁸⁾

미국은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률이 없고, 개별 주법에 의해 규율된다. 미국의 주립대학도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공법인으로서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 즉 ①주정부의 기관(Agencies 또는 Instrumentalities)으로서의 주립대학, ②공법인(Public Corporations)으로서의 주립대학, ③헌법상 독립한 법인(Constitutionally Independent Corporations)으로 구분할 수 있다(배영길, 2005: 383-384). 이 가운데 ①과 ③의 유형에는 각각 Kansas, Iowa, California 및 Michigan 등 소수의 대학이 해당한다. 대다수의 미국 주립대학은 ②의 유형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의 설립과 지배체제는 주 헌법이나 주 법률, 그리고 이에 의거한 이사회 규정 등에 의한다. 하지만 개별 주마다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체제를 일반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주립대학은 '법인'의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주법에 의해 설치된 이사회(Boards of Directors)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 주요 기관으로 통상 총장(President), 단과대학(College & School) 교수회(Faculty)·全校교수회(대학 교수회 University Faculty) 및 대학(교수)평의회(University Senate; Academic Senate; Academic Council; Faculty Senate)가

8) 이 부분은 채형복(2011: 88-89)에서 대부분 인용하였음.

설치·운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대학평의회(Academic Senate) 설치와 운영은 미연방 교육법(Education Code)과 캘리포니아 주법, 특히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CCR) 제5편(Title 5)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후자는 미연방 교육법 실시를 위한 해석과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CCR에 의하면, 대학평의회는 “교수들의 대표자로서 학문과 직업적 문제(academic and professional matters)에 관하여 대학의 행정과 지배체제에 대한 권고를 기본적 기능으로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 개념정의에 의하면, 대학평의회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학문과 직업적 문제’에 대해 대학 당국에 ‘권고하는 것(make recommendations)’이다.⁹⁾ 따라서 CCR은 원칙적으로 대학평의회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고,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대학들은 미연방 교육법과 CCR에 의거하여 대학평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를 그 예를 들어 살펴본다. 캘리포니아대학은 대학평의회 정관(Bylaws of the Academic Senate)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대학평의회는 대학총장, 캠퍼스총장(Chancellor), 단과대학의 주요 행정보직자, 단과대학에 의해 임명된 교원(교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명예교수 및 퇴직 교원도 포함) 및 그 외 정관에서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자로 구성된다. 총장(President)은 대학평의회는 당연직 의장(ex officio President of the Academic Senate)이 된다(대학평의회는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과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 The Assembly of the Academic Senate
- The Academic Council
- Standing and Special Committees of the Assembly
- Divisions of the Academic Senate

9) 권고의 주된 내용인 ‘학문과 직업적 문제’에 대하여 CCC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들고 있다. ① Curriculum, including establishing prerequisites and placing courses within disciplines ② Degree and certificate requirements ③ Grading policies ④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⑤ Standards or policies regarding student preparation and success ⑥ District and college governance structures, as related to faculty roles ⑦ Faculty roles and involvement in accreditation processes, including self-study and annual reports ⑧ Policies for faculty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⑨ Processes for program review ⑩ Processes for institutional planning and budget development ⑪ Other academic and professional matters as are mutually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ing board and the academic senate(채형복, 2011: 89).

- Standing and Special Committees of the Divisions
- Faculties of Divisions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주립대학에 설치된 대학평의회
의 경우, 주법률에 의해 설치되므로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사립대학에 설치된 대학평의회가 우리에게
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사립대학도 각 주의 법인법에 따라 정
관을 작성하여 주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법인'으로 설립되
며, 그 지배체제 역시 법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주립대학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대학평의회가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모리대학(Emory University)의 예를 들기로 한다. 에모리대학
의 대학평의회(University Senate)는 법인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¹⁰⁾

- 투표권 없는 당연직: 총장, 자문관(Chancellor), 집행부총장, 선임부총장,
학사담당부총장, 사무총장
- 학생연합회(Student Government Association) 회장 및 부회장
- 대학원생평의회(Graduate Senate) 회장 및 부회장
-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대학평의회 규칙으로 정한 직위에 있는 자
- 교수회, 학생회 및 대학평의회 규칙이 정한 기관의 대표자

그리고 대학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총장 혹은 대학당국
에 의해 제시된 사안을 포함한 대학의 일반적 이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all
matters of general University interest)를 검토·권고하며, ②새로운 정책과
변경된 기존의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③대학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총장에게 권고를 제출하며, ④명예학위취득자에 대해 권고한다.

총장과 의견일치를 본 대학평의회는 결정은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거나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총
장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문제는 이사회에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2. 영국¹¹⁾

영국(잉글랜드)의 대학은 1992년 이전의 대학과 1992년 이후의 대학의 법

10) http://www.emory.edu/SENATE/UniversitySenate/SenateRoster2009_2010.pdf.

11) 이 부분은 황홍규(2010: 351-352)에서 대부분 인용하였음.

적 지위와 거버넌스가 확연히 다르다. 1992년 이전의 대학은 보통법에 따라 국왕이 추밀원을 통해 수여하는 헌장(charter)나 개별법률 등에 의해 설립되고, 대학의 임원, 교직원, 학생, 동문, 총회 등 대학 거버넌스에 참여한 지역 인사 등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정치체·법인체를 이룬다. 즉 구성원을 갖는 사단법인적 성격의 기관으로 설립·운영되어 왔다.

반면 1992년 이후의 대학은 의회의 제정법인 1988년 교육개혁법과 1992년 계속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추밀원으로부터 '고등교육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고등교육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성격을 가지며, 교직원이나 학생은 대학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고등교육법인의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구성원이 법인의 구성원의 지위를 갖는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독립사립대학인 버킹엄대학도 1992년 이전의 대학에 적용되는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1992년 이전 대학들은 총장, 부총장, 이사회(council), 학사평의회(senate), 총회(court) 등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으며, 학외자와 학생, 동문 등이 대학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총회(court)는 왕실 인사, 지방정부 인사, 지역사회 인사, 다른 대학이나 전문기관의 대표자, 동문, 교직원, 학생대표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대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대학에 대한 공적 토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장을 선출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그 구성원 수가 많게는 3천여명에 이른다.

이사회(council)는 대학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집행적 의사결정기구이며, 총장, 부총장 등 임원, 학사평의회(senate)의 구성원 일부와 학생대표, 교수대표, 학외자 등으로 구성되며, 부총장을 선출한다. 학사평의회(senate)는 부총장, 임원, 교수,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학사와 학생 지도, 연구 등에 관한 학문적 책임기관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이후의 대학들은 법률에 따라 총장, 이사회(board of governors), 학사평의회(academic council)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총장, 학외자(전체 구성원의 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학생 대표, 교수대표 등 최소 12인 이상 최대 25인으로 구성된다. 총장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당연히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교원 및 학생 대표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두는 것은 당해 법인의 재량 사항이며, 두는 경우에는 각각 2인까지 둘 수 있다. 이사회는 그 권한을 총장이나 학사평의회 등에 위임할 수 있다. 학사평의회는 구성과 기능은 전적으로 각 대학이 법인규칙으로 정한다. 통상 대학의 임원, 교수, 학생이 참여한다. 다른 기구를 두는 문제는 당해 대학의 재량에 속한다.

영국 정부는 1992년 이전의 대학들에 대해 거버넌스를 이사회(council) 중

심으로 단순화하고 이사회 의 구성원수도 25인을 넘지 않도록 하며, 학외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정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더럼대학, 맨체스터 대학 등 이를 받아들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1992년 이전 대학들도 1992년 이후 대학들의 거버넌스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독일¹²⁾

독일의 국립대학은 2008년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프랑크푸르트대학 등을 제외하고는 '공법상의 사단'과 '국가의 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다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작센-안할트주, 작센주는 대학법에서 '국가의 시설'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두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은 '사단'으로서 구성원을 둔다.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학법에 따라 교수, 학술직원, 행정직원 및 학생은 대학의 구성원이 된다. 각각은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별로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표자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의 자치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합의적 의사결정기구 등에서는 교수집단의 투표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교수 초빙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에도 교수집단이 주도권을 가진다.

통상 본부 차원에서 총장 또는 총장단, 대학참사회(hochschulrat), 대학평의회(Senat)를 두고 있으며, 단과대학 차원에서는 학장 또는 학장단과 단과대학 평의회를 두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갖기도 하고, 상호 중첩적으로 권한을 갖기도 한다.

대학의 지도부 또는 집행부를 1인의 '총장'으로 하는 경우와 총장, 부총장, 사무총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장단'으로 하여 합의제로 운영하는 경우로 나뉜다.

대학참사회는 1998년 연방 대학기본법 개정 이후 대학 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구성원 전부 또는 과반수를 학외자로 하여 학외자가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는 독일 대학사회에서 보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대학참사회의 구성원은 주로 대학평의회의 의견이나 추천을 받아 주정부가 임명하며, 총장이거나 교수 임명권을 갖는 등 주정부의 권한의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부터 자문적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대학평의회는 교수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12) 이 부분은 황홍규(2010: 340-351)과 채형복(2011: 97-98)에서 대부분 인용하였음.

예외적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하이델베르크대학은 대학평의회 정수 20인중 교수 8인, 학술조교 4인, 학생 4인, 조교 4인 등으로 구성되어, 교수대표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대학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학에서 발하는 각종 규정의 제정, 기본규정안 및 기본규정 개정안의 입안
- 총장선출을 위한 추천후보리스트의 작성 및 임시총장단 임명 추천
-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임명 추천
- 상임위원회, 후견인회, 선거규정과 기본규정에 따른 선거기관의 구성원의 임명
- 대학참사회의 동의 유보 하에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그 계획이 대학병원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장과 협의
- 대학참사회의 동의 유보 하에 전공구조 및 중앙조직구조와 기타 조직구조를 포함한 대학구조조정안의 마련
- 연구중점사항의 설정 및 특별연구영역 확정을 위한 제안
- 국가예산계획의 입안에 있어 예산에 관한 입장 표명
- 대학 예산의 편성
- 연구와 학문적·예술적 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들에 대한 결정
- 대학참사회의 동의 유보 하에 학위과정 설치·변경·폐지의 제안
- 전공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대학에 교수 초빙 및 명예교수 임명 제정
- 대학의 명예평의원, 명예시민 또는 명예구성원 자격 수여 결정
- 대학평의회에 귀속되는 국가적 사무의 수행
- 대학이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과대학평의회 임무의 수행
- 장애학생들을 위한 전임대리인 임명
- 대학총장단의 연례보고서 수령. 그리고 어떤 사항이 확대대학평의회, 대학평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전공위원회 중 그 관할의 귀속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 관할 결정.

그리고 독일의 국립대학에는 대학평의회와는 별도로 '확대대학평의회(Dererweiterte Senat)'를 두고 있다. 이는 대학참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대대학평의회 구성원 다수의 의결로 기본학칙인 기본규정의 제정 및 그 개정권을 행사하고, 총장의 선출 및 그 소환을 결정하며, 사무총장을 제외한 기타 총장단 구성원을 선출한다. 확대대학평의회는 ①대학평의회 구성원, ②

단과대학장 또는 학부장(학부장이 이미 선출직 대학평의회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 ③연구원 및 예술연구원 대표, ④기타 조력자 대표, ⑤학생 대표로 구성한다.

총장은 대부분 대학평의회에서 선출하고 주정부가 임명한다. 이 경우 대학참사회가 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보훔대학, 쾰른대학 등이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국립대학, 재단대학인 헤센주의 프랑크푸르트대학은 대학참사회가, 괴팅엔대학 등 니더작센주의 공법상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은 재단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한다.

독일의 국립대학은 통상 공법상의 사단으로서 사단적 활동인 교육과 연구의 영역에서 자치행정권을 갖지만, 주정부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그 운영주체는 주정부이다. 그런데 니더작센주는 2003년 대학법을 개정하여 괴팅엔대학 등을 공법상의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하였다.

헤센주의 프랑크푸르트대학은 2008년 대학자체가 '재단대학'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외형상 획기적인 변화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괴팅엔대학은 여전히 '공법상의 사단'의 지위를 가지며, 프랑크푸르트대학도 여전히 교수와 학생들이 대학 구성원의 지위를 갖는 등 '공법상의 사단'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이는 대학 자체의 법적 성질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주정부의 대학 운영 방식의 변화, 즉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단계로 공법상의 재단이나 재단대학을 두어 이를 통해 대학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4. 프랑스¹³⁾

프랑스의 모든 대학은 원칙적으로 營造物(les établissements publics)이다. 프랑스법상 영조물이란 “명확하게 정의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적·재정적 자치를 향유하는 공법상의 법인”이다. 이처럼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가기관이면서 영조물이란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율성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

프랑스 국립대학의 주요 내부 지배체제는 총장 및 3개의 평의회이다. 대학 관리운영의 최고책임자는 총장이며, 총장은 다음의 3개의 평의회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프랑스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에 설치되어야 할 합의체 기관으로 ①관리평의회(또는 대학운영평의회 Conseil d'administration), ②학술연구평의회(Conseil scientifique), ③교육·대학생활평

13) 이 부분은 채형복(2007: 339-372; 2011: 95-96)에서 대부분 인용하였음.

의회(Conseil des etudes et de la vie universitaire) 등 3개의 평의회가 있다. 그러나 학술평의회, 교육·대학생활평의회는 대학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관리평의회(또는 대학운영평의회)에 제안하는 권한만 있고 최종결정권은 관리평의회(또는 대학운영평의회)에 있다. 관리평의회의 의장은 총장이 맡는다. 이 3개의 평의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평의회(또는 대학운영평의회)는 법률상으로는 협의기관이지만 사실상 대학 내 최고의결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평의회(또는 대학운영평의회)는 대학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하며, 교육부와 이뤄지는 협정 내용에 대해 의결, 예·결산 승인, 직원 배치, 총장이 학외 기관과 체결한 협정 승인, 재산취득의 결정,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 등을 그 주된 직무로 하고 있다. 전체 위원수는 30명에서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교원 대표 40~45%, 교외인사 대표 20~30%, 학생대표 20~25%, 사무계 및 기술계 직원대표 10~15%의 비율로 되어 있다.

둘째, 학술연구평의회는 연구 정책, 과학 및 기술자료 문제, 연구비 배분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는 관리평의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 위원수는 20~40명이고, 교원대표 60~80%, 박사과정의 학생대표 7.5~12.5%, 타기관 소속 교수 등 외부인사 10~3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생활평의회는 학내의 교육 및 평생 교육 방침에 대해 관리평의회(또는 대학운영평의회)에 제안하고, 교육연구과정의 신설 등을 논의한다. 또한 학생의 취업지원대책, 문화·스포츠·사회활동지원, 생활 및 학습 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검토한다. 전체 위원수는 20~40명이고, 교원과 학생대표가 동수를 이뤄 75~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사무계·기술계(직원) 대표 및 외부인사가 각각 10~1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5. 일본¹⁴⁾

일본의 국립대학은 2004년 4월 1일자로 국립대학법인법에 의해 '국립대학법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공립대학은 일부는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다수는 지방독립행정법인법에 의한 '공립대학법인'으로 운영된다.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모든 대학은 학교교육법에 의해 '총장'(학장)과 심의기구인 '교수회'를 두고 있다. 교수회의 구성, 참여 범위와 심의사항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자율사항

14) 이 부분은 황홍규(2010: 349-350) 및 채형복(2011: 93-94)에서 대부분 인용하였음.

이다.

국립대학법인은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총장'에게 두고 있고, '이사회', '경영협의회', '교육연구평의회'를 법률상의 필수적 논의 또는 심의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총장은 법적으로 이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이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도 총장이 정하며, 총장이 정한 직무를 분담한다. 이사는 총장의 보조·보좌기관이다.

경영협의회의 구성원 중 2분의 1 이상은 학외자가 된다.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연구평의회는 전원이 학내자로 구성된다. 총장은 경영협의회의 학외자인 구성원과 교육연구평협의회의 구성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총장선고회의'가 정하는 바에 의해 선출되고, 문부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국립대학법인은 법인의 업무를 '이사장'에게 관장하게 하거나 '총장'에게 관장하게 할 수 있다. 법률상의 심의기관으로 '경영심의기관', '교육연구심의기관'을, 총장을 선출하는 기구로 '총장선고기구'를 두고 있다.

기존의 일본 국립학교설치법 하에서는 평의회체제가 교육·연구는 물론 재정·경영 면에서 '학부자치', '교수회자치'제도 하에서 폭넓은 의사결정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대 법인화 이후 평의회체제는 종언을 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일본 국립대학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온 전통적인 대학자치의 형태는 사실상 붕괴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본의 사립대학은 이사회와 평의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41조에 의하면, 이사 정수의 2배를 넘는 수의 평의원으로 조직되는 평의회는 학교법인 내에 설치된다. 평의회는 자체 의장을 두지만, 그 소집권자는 이사장이다. 평의회는 다음의 자들로 구성된다(동법 제44조).

- 학교법인의 교직원 가운데 기부행위(寄附行爲)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자. 단, 이 경우, 평의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그 연령이 25세 이상인 자 가운데 기부행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자
- 이 외 기부행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자

그렇다면 평의회는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2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은 ...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청문)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는 평의회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청문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 예산, 차입금(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 기부행위
- 합병
- 일정한 조건 하의 해산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 기타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것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42조는 평의회가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즉, 동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은 기부행위에서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평의회가 의결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서는, 와세다(早稻田)대학, 게이요(慶應義塾)대학, 아자부(麻布)대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대학들은 평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평의회가 당해 대학의 최고의결기구가 되고 이사회는 집행기구의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있다.

제4장 대학 거버넌스의 방향 -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중심으로

제1절 개설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학의 자율적 결정사항이지만, 모든 국립대학에서 전임교수가 참여하는 교수회를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있다. 다만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중에서 학칙에서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는 대학은 6개(강원대, 경상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이며, 3개 대학(경북대, 전북대, 충남대)은 대학평의원회가 아닌 교수평의원회만을 두고 있다.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학평의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충북대는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기구화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교수뿐 아니라 학생과 직원을 참여하게 하고 있는 대학, 이를 배제한 대학, 학외자를 참여하게 한 대학, 내부구성원으로만 하는 대학 등으로 구분된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및 권한에 있어서는 대부분 단순한 심의기구인데 반하여, 서울대학교는 일부 기능에 대하여 의결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범위와 참여절차, 권한과 기능,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7개 거점국립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충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제2절 구성범위와 참여절차

1. 구성범위

대학의 “자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집단은 대학의 내부구성원에 한정된다. 자치(自治)라는 용어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구성원 중에서 어떤 집단을 포함시킬 것이며, 어떤 집단이 주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논란도 많다. 한편 “의사결정절차로서의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학의 내부구성원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의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허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우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집단을 내부구성원에 한정하고 있는 대학은 강원대, 서울대, 전남대, 제주대 등이며, 외부인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대학은 부산대와 충북대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주도집단은 교수대표이며, 직원대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대학은 부산대뿐이다. 다만 서울대는 학생대표를 참관인으로 허용하고 있고, 강원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등에서는 직원 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

<표 4-1> 대학평의원회 구성집단

대학	교수	학생	직원	외부
강원대	○		○	
경상대	○	○	○	
서울대	○		○	
부산대	○	○	○	○
전남대	○		○	
제주대	○		○	
충북대	○		○	○

* 각 대학의 학칙 및 평의원회 규정

대학의 자치과 관련하여 종래 지배적인 학설은 교수회 자치의 입장이었다. 양건(2009: 427-428)은 ‘누구에 의한 자치인가’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교수회 자치’의 입장을 지지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학개혁운동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대학에서 학생의 대학 운영 참여권이

15) 제주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선출된 평의원 중 여성의원 수가 100분의 20이 되지 아니할 때는 미달되는 인원내 대해서 2인 이내의 여성위원을 교수회장이 여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정되었으나, 학생의 대학 운영 참가가 대학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학생을 단순히 영조물(공공시설물)의 이용자로 보는 전통적 견해는 수정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도 대학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한다.

정종섭(2009: 571)도 대학의 자치가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인 대학의 자유의 수단인 점을 근거로 교수회 주체설을 지지한다. 다만, 이경우 교수 개개인이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대학 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의 교수도 대학이나 학사운영에 관한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학문 연구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예: 학사행정이나 대학 운영에 대한 비판) 내에 한하여 주체성이 인정되고, 대학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주체는 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이경운(2007: 122-123)은 교수회가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이경운은 대학경영에서도 전문적 식견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교수가 이러한 학내외 문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전체적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교수가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교수의 본래의 임무인 연구와 교수 부분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교수회의 권능은 전문직능적 자유에 기초한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본래적 기능에 속하는 사항만으로 한정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에의 교수대표의 참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추천에 의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학교 특별편입학 선발시험을 위한 교육대학교 총장들의 공고에 대하여 교육대학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학생선발권은 대학총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며, 학생선발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며 결정에 대하여 비판하는 범위 내에서 재학생의 대학자치에의 참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건의·비판을 통한 참여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사건 공고들에 의해 청구인들의 대학자치에의 참여권이 제한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3.09.25, 2001헌마814). 즉 헌법재판소도 학생들의 의사결정권까지는 인정하지 않지만, 의견 개진, 건의, 비판 등의 방법에 의한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황홍규, 2010: 24-25). 먼저 미국은 적지 않은 주에서 주 헌법이나 주 법률로 주립대학의 이사회에 학생들이 표결권을 갖고, 또는 표결권 없이 참석권과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워싱턴주와 아이오와주는 이

사회에 교수는 배제하고 학생만을 투표권을 갖는 이사회로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는 교수와 학생 대표가 나란히 투표권을 갖고 이사회에 참여한다. 캘리포니아주대학의 경우에는 학생 2인과 교수 1인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콜로라도주의 경우에는 콜로라도대학을 제외한 주립대학의 이사회에 학생과 교수 대표가 동수로 투표권없이 발언권을 갖고 참여하며, 버지니아주의 경우 반드시 학생 1인 이상이 투표권없이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국립대학에서는 학생들은 대학의 구성원의 신분으로 대학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 받고 있다. 독일의 국립대학은 교원, 학생, 직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법상의 사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교원, 학생, 직원들은 참여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사단인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자치행정에의 참여가 법적 권리로 보장된다. 1992년 이전에 대학의 지위를 가진 영국의 대학들도 교원과 학생은 물론이요 동문과 지역사회의 인사들까지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학생들도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운영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또한 1992년 이후에 대학의 지위를 획득한 대학에 있어서도 비록 학생들이 법적으로 대학의 구성원의 지위를 갖지는 못하지만 법률에 의해 이사회에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다.

Martin Trow(1974; 황홍규, 2010: 15에서 재인용)는 고등교육체제가 엘리트형 단계에서 대중형 단계로, 대중형 단계에서 보편형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음의 <표 4-2>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의 내부 거버넌스가 엘리트형 체제에서는 장로교수에 의한 과두지배이나, 대중형에서는 장로교수 외에 젊은 교수와 학생이 참가하는 민주적 지배로, 보편형에서는 대학내 합의가 붕괴되고 학외자에 의한 지배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고 한다.

<표 4-2> Martin Trow의 고등교육체제의 단계 이행별 변화

고등교육의 단계	엘리트형	대중형	보편형
해당연령중 학생비율	15% 미만	15~50%	50% 이상
고등교육의 기회	소수자의 특권	상대적 다수의 권리	만인의 의무
의사결정주체	소규모 엘리트집단	엘리트집단+이익집단+정치집단	일반대중
대학내부거버넌스	장로교수에 의한 과두지배	장로교수+젊은교수, 학생의 참가에 의한 민주적 지배	대학내의 합의의 붕괴, 학외자에 의한 지배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학 거버넌스에서도 보편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을 단순한 교육 대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자로서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국의 주립대학처럼 주정부,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하여 상생발전하는 국립대학을 상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일반 시민의 의사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집단이 전체 평의원수의 과반을 차지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참여절차(대표방식)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집단 내에서 평의원을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선출방식, 지명방식, 당연직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선출방식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평의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교수평의원은 단과대학(원) 교수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대체로 교수 20~50인마다 1인의 평의원을 선출한다. 서울대에서는 직원평의원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선출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교수평의원은 대체로 보직교수를 제외한 평교수이다.

지명방식은 총장이 교육에 저명한 외부인사를 지명하거나(충북대), 총장이 처장 중에서 2인을 지명하거나(전남대), 총장이 총동문회 대표를 포함한 외부인사를 지명하거나(부산대),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울대) 위촉하는 방식이다. 제주대에서는 직원 2명도 총장이 지명하고 있다.

당연직방식은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을 재직기간동안 당연직 평의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교수회 회장 및 부회장을 당연직 평의원으로 규정한 대학도 있고(제주대, 경상대), 처장, 사무국장, 행정본부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한 대학도 있고(강원대), 보직교수(각 대학원장, 단과대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를 당연직으로 규정한 대학도 있다(충북대). 특히 경상대는 교수회의 회장, 부회장(3명), 사무국장, 정책국장 등 교수회 임원을 당연직 평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대표방식을 정하지 아니하고, 교수회, 직원단체, 총학생회 등 각 단체에서 선출방식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학도 있다(부산대).

각각의 방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지만, 민주적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부합하는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선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전문적 식견이나 객관적 시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명방식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명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학 내부집행기구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본 취지가 총장을 포함한 집행기구에서 추진하는 대학내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거나 결정함으로써 견제를 통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직원·학생 등의 각 집단 내에서 평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하여 평의원회 규정에 직접적으로 인원과 선출방법을 규정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각 단체별 비율은 대학 거버넌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별 인원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출방법까지 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모든 평의원들은 개인적 자격으로 평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 단체의 이해를 대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평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의원회 내에서 각 단체별 구성비율을 정하여 놓는 것 자체가 평의원회 내의 구성집단별 거버넌스의 형태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3절 권한과 기능

1. 의결권 여부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심의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의결권까지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는 심의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이 학칙제정권, 교무통할권 등을 총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학칙의 최종 의결권을 교수회가 가지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헌재 2003.06.26, 2002헌마337, 2003헌마7·8 병합), 교수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대는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의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완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대는 “평의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대는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심의사항) 이외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부적 효력을 가지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상 최종적 의결권을 총장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에 최종적 의결권을 부여할 수 없지만,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평의원회에 최종적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경상대는 “총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언적으로나마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심의사항의 범위

현재 각 대학의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

대학	심의사항
강원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대학원, 학부(학과군, 학과) 또는 부속기관(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그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간접연구비, 장학금 기타 보조금 지급원칙에 관한 사항 5. 기성회계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6. 교권과 복지에 관한 사항 7. 교원인사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8.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 9.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처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장·의장·평의원 4분의1 이상 또는 재적교수 15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경상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p>4.의장 또는 평의원 중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p> <p>5.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p>
서울대	<p>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p> <p>2.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p> <p>3. 교육·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p> <p>4. 대학·대학원 또는 학부·학과 및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p> <p>5.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6. 학칙,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p> <p>7.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p> <p>8.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p>
부산대	<p>1. 예산과 결산</p> <p>2. 대학(원), 학과(부) 및 전공의 설치나 폐지</p> <p>3. 처·국, 대학(원) 행정실 및 지원·부속시설의 설치나 폐지. 다만, 산학협력단 소관 지원·부속시설은 제외한다.</p> <p>4. 대학 장기발전계획</p> <p>5.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4항에 관한 사항</p> <p>6.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p> <p>7. 의장이나 재적 대학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p>
전남대	<p>1. 대학(원)·학부(과) 및 부설기관(시설)의 설치와 폐지</p> <p>2. 학칙의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p> <p>3. 대학의 예산 및 결산</p> <p>4. 총·학(원)장의 선출 방법</p> <p>5. 대학의 주요 발전계획, 시설 및 환경</p> <p>6. 교권과 후생복지</p> <p>7. 주요 보직자(부총장, 대학원장, 처장)에 대한 임명동의</p> <p>8. 총장, 평의원회 의장, 재적 평의원의 1/3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p>
제주대	<p>1.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p> <p>가. 대학발전계획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p> <p>나. 대학 또는 부속기관, 학부(학과), 강좌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p> <p>다.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p> <p>라. 교직원 인사의 기본방침 및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p> <p>마. 예산편성·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 교직원의 처우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사. 평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아. 기타 총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p>2.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권에 관한 사항 나. 교수회의 조직과 규정,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총장임용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마. 평의원 1/4인 이상 또는 교수회 위원회의 발의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p>3. 대학 구성원 또는 각 기관에서 소청한 사항</p>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부·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폐지·운영과 그 교원조직에 관한 사항 3.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장학금 기타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대체로 중장기발전계획, 학칙개정, 교육·연구 및 학사운영의 기본사항,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행정조직의 개폐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교직원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예산 및 결산 등이다. 그리고 주요보직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강원대, 전남대), 대학 구성원 또는 각 기관에서 소청한 사항(제주대) 등을 포함한 대학도 있다.

이 외에 보충적으로 총장이 대학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평의원의 발의정족수에 있어서는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상대는 재적평의원의 1/5, 강원대, 서울대, 제주대는 재적평의원의 1/4, 부산대, 전남대는 재적평의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강원대의 경우, 대학평의원이 아닌 재적교수 1/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점이며, 충북대는 대학평의원에게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너무 많은 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면밀한 심의가 어려울 수가 있고, 심의대상을 너무 한정할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각 대학마다의 개별적 상황에 적합하게 심의대상을 설정

해야 하겠지만, 대체로 대학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을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총장이나 의장, 그리고 일정수 이상의 평의원이 발의하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인바,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재적평의원의 1/4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의 정족수는 최소한 1/4보다는 적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조직과 운영

1. 기구

1) 임원

각 대학평의원회의 임원 종류와 선출방식은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대학평의원회의 임원		
대학	임원	선출방식
강원대	의장 1인 부의장 2인 사무총장 2인	의장과 부의장: 선출직 평의원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 사무총장: 의장이 선출직 평의원 중에서 임명
경상대	의장 1인 부의자 3인 사무국장 1인 정책국장 1인	의장: 교수회 회장으로 보임 부의장: 교수회 부회장으로 보임 사무국장: 교수회 사무국장으로 보임 정책국장: 교수회 정책국장으로 보임
서울대	의장 1인 부의장 1인	평의원회에서 호선
부산대	의장 1인 부의장 1인 간사 약간명	의장: 교수회장 부의장: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 간사: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
전남대	의장 1인 부의장 1인 감사 2인 이사 3인(기획·서기·총무)	의장: 교수협의회 회장 부의장 및 감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이사: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
제주대	의장 1인	의장: 교수회장

	부의장 2인	부의장: 1인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 1인은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지명
충북대	의장 1인 부의장 1인	평의원회에서 호선

대학평의원회의 임원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강원대는 사무총장을 두고 있고, 부산대는 간사를 두고 있으며, 전남대는 감사와 이사를 두고 있다.

대학평의원회의 내부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무기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위를 전체 대학평의원회의 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의체 조직의 구성원리와 다소 상이한 방식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의체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에는 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지만, 민법의 공익법인에는 이사처럼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평의원회라는 조직체의 성격은 집행기구나 의결기구가 아니라, 회의체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이어나 감사와 같은 임원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조직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규모의 정부위원회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가 많거나 상시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고, 다만 간헐적인 회의 일정에 따라 업무를 지원할 부서를 지정하고, 약간명의 직원이 운영업무를 겸무하는 형태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대체로 의장이나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감사·이사 등은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다. 다만 경상대는 임원인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정책국장에 대하여 별도의 선출절차 없이 교수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정책국장으로 보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대학평의원의 운영주체를 교수회로 간주하는 것이다. 대학의 기본적 사명인 교육과 연구의 주체인 교수 중심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에는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른 가치인 민주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떠한 집단이든 회의체의 과반을 점유하면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비민주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위원회

대체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운영위원회를 기본적으로 두고 있으며, 분야별 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또는 상임위원회)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표 4-5> 대학평의위원회의 위원회

대학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강원대	○	○ (교무연구, 학생입학, 기획협력, 재무, 교권복지)	○
경상대	○	○ (교무학생, 기획연구, 재정사무)	○
서울대	○	○	○
부산대	○	○ (운영위원회 산하)	
전남대	○	○ (교무학생, 재정복지, 기획시설환경, 산학 연구조정)	○
제주대	-	○ (기획사무, 규정심의, 예결산)	○
충북대	-	-	-

다만 특이한 것은 부산대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의기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울대와 부산대는 분과위원회의 종류를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부산대는 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면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과 그 수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분과위원회의 종류는 규정에 명시하기보다는 대학의 상황변동에 따라 유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경상대의 경우에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대학평의위원회규정에 두지 않고, 운영규정에 두고 있다.

2. 회의

1) 정기회와 임시회

충북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연 1회 이상의 정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뿐이며, 다른 사항들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굳이 정기회를 자주 개최하도록 규정하기보다는,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임시회의 소집요구에 있어서는, 대부분 총장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수(1/3 또는 1/4) 이상의 평의원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원대는 (평의원이 아닌) 재적교수 1/15 이상이 서면에 의해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대학평의회가 전체교수의 의견이나 이해를 원활하게 대변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인 바, 소집요구를 하는 평의원의 정족수를 낮추어 쉽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두 가지 제도를 병렬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4-6> 대학평의원회의 회의

대학	정기회	임시회
강원대	연 4회 (매 학기초와 학기말)	총장·의장·평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교수 1/15 이상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소집
경상대	매월 1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1/5 이상의 요구
서울대	연 4회 (매학기 2회)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1/4 이상의 요구
부산대	연 2회 (3월과 9월)	총장이나 재적 대학평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
전남대	연 2회 (매학기초)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3인 이상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
제주대	연 1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 또는 평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
충북대	별도로 없음	총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

2) 회의의 소집권자

일반적으로 정기회이든 임시회이든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그러나 일정수 이상의 평의원의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거나 결여될 수도 있다.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지만, 의장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고”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의장이나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최초의 회의는 아무도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후 최초의 회의는 총장이나 교수회장이 소집하고, 일정수 이상의 평의원의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평의원들이 직접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의의 소집요구를 위한 인원은 대개 재적 평의원의 1/3이나 1/4를 규정하고 있다(경상대는 1/5). 일반적인 의결정족수가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인 점을 감안하면,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재적 평의원의 1/4이 되므로,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위한 정족수는 재적 평의원의 1/4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정족수

일반적인 정족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상대는 재적 평의원 2/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 평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가중된 정족수이다.

그리고 일부 안건에 대하여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전남대는 일반 정족수와 달리 학칙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2/3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가중하고 있다. 경상대도 학칙변경, 총장의 재심의 요구사항, 평의원의 과반수가 재심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적 평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일반 정족수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에는 재적 평의원의 1/4 이상의 찬성으로도 의결될 수 있게 된다. 학칙 개정안이나 예

산안에 대한 심의는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의 많은 위원회에 있어서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내의 가장 중요한 심의(또는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면 심의나 의결권의 위임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심의 및 재심 절차

1) 심의절차

대부분의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분과(또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의 사전적 논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다수의 참여와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호들을 단순하게 합산하여 집계한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공동의 숙고와 논의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선호와 견해가 변경·수정된 후 모아진 의견의 결과(다수결)이어야 한다는 점이다(Gutmann & Thompson, 1996; 김도균, 2009: 14에서 재인용).

따라서 안건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며, 또한 본회의에서 분과위원장이 사전심의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한 후에 비로소 본회의의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의장이나 총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재심 절차

현행 법령상 대학평의원회를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한 자문기구와 유사한 심의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대학평의원회에서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고, 총장은 일정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총장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종래의 심의 결과대로 재의결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정족수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의결의 효력은 총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속력을 가져야 하지만, 총장에게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심리적 압박에 불과할 수도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재심의 결과도 총장에게 통보하고, 총장은 일정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충남대학교 대학평의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조에서 정한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평의회는 본교 전임교수·직원·조교·학생 대표, 총장이 추천하는 동문 및 지역인사로 구성한다.

② 평의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교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수평의원: 15명
2. 직원협의회에서 선출하는 직원평의원: 5명
3. 조교협의회에서 선출하는 조교평의원: 1명
4. 총학생회에서 선출하는 학생평의원: 2명
5. 대학원 학생회(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포함)에서 선출하는 대학원생평의원: 1명
6. 총장이 추천하는 동문 및 지역인사: 6명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평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각 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의장 및 부의장)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본교 전임교수로 하고, 부의장은 본교 전임교수가 아닌 평의원으로 한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을 대행하게 한다.

제4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평의원의 사임 및 기타의 사유로 평의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후임 평의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2. 학칙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과 결산
4. 대학(원), 학과(부) 및 전공의 설치, 통합 및 폐지
5.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7. 총장 또는 의장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8.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의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평의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2월 및 8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④ 평의원회가 구성된 후 최초의 회의는 총장이 소집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총장 또는 평의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에 대하여 공고 및 고지하여야 한다.
- ⑦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학무위원은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대학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⑨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무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학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

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학칙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평의원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8조(심의 및 재심의)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평의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①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운영지원) ①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학 구성원인 평의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외 평의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세칙) ① 평의원회는 학칙 및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문헌 >

- 강병운. (200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2호. 421-446.
- 김도균. (2009). 공동의사결정으로서의 거버넌스와 절차적 정의: 세 가지 모델. 「국정관리연구」 제4권 제2호. 1-20.
- 김배원. (2007).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323-372.
-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 (2000).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 김종성. (2009). 대학총장의 리더십. 홍재환·함종석 편. 「국가경쟁력과 리더십」. 법문사. 281-307.
- 김종성. (2012). 국립대학 내부조직의 조직법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2호. 53-83.
- 김형근. (1993). 대학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순홍·정규호. (2000). 거버넌스와 젠더, 젠더친화적 거버넌스의 조건에 대한 탐구.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박정수. (2006).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6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48.
- 배영길. (2005).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377-408.
- 백정하. (1997). 대학총장의 변혁적 지도성에 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제9권 제1호.
- 백정하. (1998). 대학총장의 변혁적·거래적 지도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낙인. (2007).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총장선거.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129-159.
- 송지광·한상연. (2005). 한국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3호. 353-378.
- 신정철. (2007).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정부 및 대학 간의 인식 차이. 「교육행정학연구」 제25권 제3호, 243-269면.
- 신현직. (1997). 교육법제개혁과 학교의사결정구조의 문제.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 양 건. (2009). 「헌법강의」. 법문사.
- 오석홍. (1999). 「조직이론」. 박영사.
- 이경운. (1996). 영조물과 그 설치주체간의 관계. 「공법연구」 제24권 제4호.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321-338.
- 이봉귀. (2007). 국립대학의 자율성 강화 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주. (1987). 한국대학 총학장의 영광과 시련. 「대학교육」 제26호.
- 이시원. (2002). 일본의 대학개혁의 방향: 국립대학지배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I」. 370-391.
- 이종원. (2005).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한 거버넌스의 이해.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329-340.
- 이창원·최창현. (2003). 「새조직론」. 대영문화사.
- 임재홍. (2006).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민주법학」 제30호. 279-310.
- 장영수. (2009). 「헌법학」. 홍문사.
- 정용덕. (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 정종섭. (2009). 「헌법학원론」. 박영사.
- 조규린. (1986).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 「법학연구」 제13집. 20-41.
- 채형복. (2007). 프랑스의 대학자치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세계헌법연구」 제13권 2호. 339-372.
- 채형복. (2011). 대학자치와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제도적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3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81-114.
- 한영환. (1987). 총학장의 대내적 인간관계. 「대학교육」 제26호.
- 황홍규. (2010). 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 미국, 독일, 영국 및 한국.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Baldridge, J. V. (1983).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and University. In J. Victor & Terrence Deal(ed.). *The Dynamics of Organizational Change in Education*. California: McCutchan Publisher.
- Bidwell, Charles E. (1965). The School as a Formal Organization. In James G. March(ed.). *Handbook of Organization*.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 Breuer, R. (1986). *Die öffentliche VVDStRL* 44.
- Cohen, Michael D. and James G. March. (1974). *Leadership and Ambiguity:*

- The American College President*. N.Y.: McGraw-Hill.
- Fielden, J. (2008). Global Trends in University Governance. *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Number-9, p.2.
- Gutmann, A. & Thompson, D.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Cambridge/Mass.
- Jessop, B. (1997). The Governance of Complexity and the Compesity of Governance: Preliminary Remarks on Some Problems and Limits of Economic Guidance, in A. Amin & J. Hausner (ed.). *Beyond Market and Hierarchy*. Cheltenham: Edward Elgar.
- Jessop, B. (1999). The Social Embeddedness of the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Governance. in F. Adaman & P. Devine (ed.). *The Socially Embedded Economy*. Montreal: Blac Rose Book.
- Katz, D. & R. Kahn. (1966).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N.Y.: John Wiley.
- Keane, J. (2003). *Global Civil Socie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ach, R. & J. Percy-Smith. (2001). *Local Governance in Britain*. New York: Palgrave.
- Marginson, S. & M. Considine. (2000). *The Enterprise University: Power, Governance and Reinvention in Austral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ayer, O. (1986). *Deutsches Verwaltungsrecht*. 2. Bd.
- Mintzberg, H. (1979). *The Structuring of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oses, I. (2006). Global Trends in University Governance. Thai-Australian Workshop on University Governance. p.1.
- Owens, R. G. (1991). *Organizational Behavior in Education*. 4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arsons, T. (1960). *Structure and Process in Modern Society*. The Free Press.
- Peters, B. (1996). *The Future of Governing: Four Emerging Models*, Lawrence, Kansas Univ. Press(고숙희 외 공역, 1998. 미래의 국정관리. 서울: 법문사).
- Pierre, J. (1999). Models of Urban Governance: The Institutional Dimension of Urban Politics. *Urban Affairs Review* 34(3): 372 ~ 396.
- Pierre, J. (2000). Conclusion: Governance beyond State Strength, in Jon

- Pierre(ed.). *Debating Governance* p.241 ~ 246.
- Rhodes, R. (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Vol.44. 652-667.
- Starkey, K. (1995). Opening up Cooperative Governance. *Human Relations* 48(8): 837-973.
- Trow, M. (1974).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OECD: Paris. pp.51~101.
- Weick, Karl E. (1976).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Loosely Coupled Syste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21. 1-19.

<부록 1>

강원대학교 평의원회 운영규정

제정 1989. 3. 14 규칙 제 265호
개정 1992. 2. 15 규칙 제 329호
개정 1992. 6. 26 규칙 제 349호
개정 1994. 5. 3 규칙 제 398호
개정 1998. 1. 21 규칙 제 518호
개정 2001. 9. 1 규칙 제 672호
개정 2002. 4. 22 규칙 제 737호
개정 2004. 3. 29 규칙 제 810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 859호
개정 2006. 3. 1 규칙 제 893호
개정 2006. 5. 1 규칙 제 920호
개정 2010. 2. 22 규칙 제11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5조에 근거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평의원회는 각 전무대학원, 단과대학, 독립학부 등의 교수회가 소속전임교수 중에서 선출하는 선출직평의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당연직 평의원(처장, 사무국장, 행정본부장)으로 구성하되 그 정수는 7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2. 22)

제3조(평의원의 선출과 자격) ① 선출직평의원은 단과대학, 학부(대학), 독립학부 등의 교수회에서 평의원임기 만료 40일전에 선출한다.

② 각 단과대학, 학부(대학), 독립학부의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평의원의 수는 재적교수(휴직자 및 장기출장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따라서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재적교수의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2. 재적교수의 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
3. 재적교수의 수가 40인 이상 60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4. 재적교수의 수가 60인 이상 80인 미만인 경우에는 4인
5. 재적교수의 수가 8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6. 재적교수의 수가 10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에는 6인(제893호)

7. 재직교수의 수가 120인 이상인 경우에는 7인(제893호)

③선출직평의원이 되는 자격은 이 대학교에 재직하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무위원, 부처장, 부학장, 입학관리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서울본부장, 중앙박물관장, 중앙도서관장, 중앙정보전산원장, 학생생활관장, 어학교육원장, 공동실험실습관장, 기초교육원장, 신문사주간은 선출직평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2. 22)

④휴직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 중인 자는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평의원으로서 휴직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의 인사발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개시됨과 동시에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선출직 평의원이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정당한 이유는 14일 이내에 소명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없이 연속 3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 의장은 즉시 해당교수회에 대하여 후임자의 선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부의장·사무총장) ①평의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춘천캠퍼스 1인, 삼척캠퍼스 1인), 사무총장 2인(춘천캠퍼스 1인, 삼척캠퍼스 1인)을 두되,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직 평의원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사무총장은 선출직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2. 22, 2006. 3. 1)

②의장선거와 부의장 선거는 분리하여 실시하되, 입후보절차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의장 선거는 각 캠퍼스별로 실시한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기회를 부여하거나 봉사계획서 등의 배포를 허용할 수 있다.(제893호)

③제1차 투표에서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1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1순위득표자만을 대상으로, 1순위득표자가 1인인 때에는 1순위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교권·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각 캠퍼스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각 캠퍼스의 사무총장은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평의원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 2. 22, 2006. 3. 1)

⑤평의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경우나 또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평의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선출절차를 주재하여야 한다.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장선출절차를 주재함에 국한되며, 의장선출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다.

⑥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때에는 그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⑦평의원회의 활동지원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독자적인 사무실과 약간명의 직원을 두되, 의장이 운영의 책임을 맡는다.

⑧ (삭제 2010. 2. 22)

제5조(임기) ①선출직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당연직평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시까지로 한다.

④선출직평의원이 교무위원, 부처장, 부학장, 입학관리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서울본부장, 중앙박물관장, 중앙도서관장, 중앙정보전산원장, 학생생활관장, 어학교육원장, 공동실험실습관장, 기초교육원장 신문사주간으로 임명되거나 교수직 또는 평의원직을 사임한 경우 혹은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교수회는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2. 22)

제6조(전체회의) ①평의원회의 전체회의는 총장·의장·평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교수 15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 전체회의는 매 학기초 및 학기말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2)

③전체회의의 일정과 안건은 소집요구자의 요구에 의하되,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안건을 추가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의장은 전체회의일 3일전까지 일정과 안건에 관한 자료를 모든 의원에 게 서면·이메일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정과 안건명만을 통지할 수 있다.

⑤전체회의에서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긴급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전체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전체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개회된 후 안건의 표결시에 재석한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석의원이 재적의원의 3분의 1

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 및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이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대학원, 학부(학과군, 학과) 또는 부속기관(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그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간접연구비, 장학금 기타 보조금 지급원칙에 관한 사항
5. 기성회계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2)
6. 교권과 복지에 관한 사항
7. 교원인사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8.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
9.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처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0. 2. 22, 2006. 3. 1)
10. 기타 총장·의장·평의원 4분의1 이상 또는 재적교수 15분의 1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의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완결된다.

제8조의2(총장선거관리) ① 평의원회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주관한다.

② 평의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강원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규정 제16조에 따른 감시와 제재의 권한을 갖는다.

③ 제2항의 불법선거감시와 제재를 위하여 평의원회에 불법선거운동고발센터를 둔다. 다만, 제1항의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평의원회에 둔 불법선거운동고발센터의 직무는 종료되며, 그 위원회에 즉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전체회의의 심의절차)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안건은 전체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분과위원회가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안자(부서)가 원안의 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정된 원안만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②전체회의에서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부서)의 제안설명과 해당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심의결과 보고를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정안발의 또는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긴급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원 대표자의 제안설명만을 청취한다.

③전체회의에서는 의원 5인 이상 또는 해당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해당분과위원회가 수정안을 상정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심의하여야 하며,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 한하여 원안을 심의할 수 있다.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원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하여 전체회의에서 긴급수정안을 발의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긴급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긴급수정안을 먼저 심의하여야 하며, 그 긴급수정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원안 및 수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전원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⑦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토론을 거쳐 표결하여야 한다.

⑧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고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며, 표결선포후에는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토론의 재개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다. 다만, 의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투표를 개시할 당시에 회의장에 재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명의 투개표관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⑩의원이 질의하거나 발언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⑪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⑫긴급을 요하는 사항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평의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서면결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 10조(심의결과 통보) 의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총장의 재심의 요구) ①총장이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하려면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붙여서 평의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의 원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평의원회는 총장의 서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 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재통보 하여야 한다.

③평의원회가 당초의 의결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와 총장이 제1항 제2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원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때에 이를 찬성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총장이 제2항에 의하여 재통보된 심의결과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학교 전체교수회의를 소집·개 회하여야 한다. 대학교 전체교수회의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회가 재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 중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안건은 그 결정 대로 확정된다.

제 12조(총장의 평의원회 출석) ①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3조(교직원 및 학생대표의 평의원회 출석) ①전체회의에서 의원 5인 이상 또는 해당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대표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다.

제 14조(업무의 평가) 평의원회는 대학 행정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의 책임자 및 실무자의 출석, 관련서류 등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5조(분과위원회) ①평의원회의 심의기능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에 교무연구·학생입학·기획협력·재무·교권복지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모든 의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은 모든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참고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모든 의원은 모든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고 분과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2)

③분과위원회는 평의원회에 이미 제출되었거나 앞으로 제출될 안건을 사전심의하여 전체회의에 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별 소관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소관 분과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소관분과위원회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는 심의를 스스로 할 수 있다.

1. 교무연구분과위원회

가. 학칙의 제정과 개정

나. 교원인사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다. 교육과정의 편성원칙

라. 교수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대학, 전문대학원, 독립학부, 학과의 설치와 폐지 및 정원의 조정 (개정 2010. 2. 22)

바. 기타 교무·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2. 학생입학분과위원회

가.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

다. 장학금 지급원칙

라. 기타 학생·입학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획협력분과위원회

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나. (삭제 2010. 2. 22)

다.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라. 홍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기획·대외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4. 재무분과위원회

가.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재무에 관한 중요사항

5. 교권복지분과위원회

가. 교권에 관한 사항

나. 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⑤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⑥분과위원회 회의는 의장·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전임교수 10인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심의요구를 하는 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분과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의장·부의장·사무총장·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의장이 의원 가운데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하는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은 15인 이내로 한다.(제893호)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되, 의장이 겸임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소관심의사항이 아닌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1. 평의원회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이 대학교의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
3. 이 대학교와 평의원회의 각종 제도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평의원회의 각종 행사 및 대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5. 총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처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2, 2006. 3. 1)
7. 의장의 대내외적 활동에 대한 보좌 및 자문
8. 각종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이 규정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분과위원회의 소관심의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

④운영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운영위원회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또는 전임교수 10인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심의요구를 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⑥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2. 22)

제17조(각종 위원회) 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의 의결로 각종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조직과 기능은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 또는 의원 이외의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회의 및 결과의 공개) ①전체회의의 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로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직원·학생·외부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방청인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제19조(세칙) ①평의원회는 학칙 및 이 규정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평의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제정하고 이를 개정할 수 있다.

②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전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20조(규정 흠결의 보충) 이 규정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989. 3. 14 규칙 제2659호)

① 이 규정은 '88. 6. 24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의결전에 결의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의된 것으로 한다.

부 칙 (1992. 2. 17 규칙 제32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 26 규칙 제34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5. 3 규칙 제3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21 규칙 제5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 규칙 제672호)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22 규칙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2년 4월 15일 현재 발전기획단 전문위원으로 재임중인
선출직 평의원은 제3조 제3항 단서 및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
조 제1항에 의한 임기말까지 평의원직을 보유한다.

부 칙 (2004. 3. 29 규칙 제8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8 규칙 제859호)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규칙 제893호)

이 규정은 200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규칙 제920호)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2.규칙 제1184호)

제1조(시행일) ①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현재 재임중인 선출직 평의원(제11대)은 제3조 제3항 단서 및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1항에 의한 임기말까지 평의원직을 유지한
다.

<부록 2>

부산대학교 대학평의회규정

제정 2005. 11. 14 규칙 제1357호
개정 2006. 4. 18 규칙 제1396호
개정 2008. 2. 28 규칙 제1534호
개정 2008. 12. 18 규칙 제166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학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평의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학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교수회를 구성하는 교수회 평의원
2. 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산대학교지부 및 직원협의회를 구성하는 직원 대표 5명
3. 총동문회 대표를 포함한 총장이 추천하는 교외 인사 5명
4. 총학생회를 구성하는 학생 대표 3명

②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의 선출방법은 각 단체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임기) ①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대학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평의원의 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전임교원, 직원 또는 학생 대표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전임교원, 직원 또는 학생 대표의 직을 사임하거나 상실한 때
3. 전임교원, 직원 또는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때

③ 제2항의 상실에 따른 후임 대학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임원) ① 대학평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명
2. 부의장 1명
3. 간사 약간 명

② 의장은 교수회장으로 한다.

③ 부의장은 대학평의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의장이 대학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이 정하는 회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총장이나 재직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일사와 의안을 미리 대학평의원에게 알린다.

제7조(정족수) 대학평의원회는 재직 대학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대학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출석과 자료제출) ①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대학(원)장, 처장, 사무국장 등 관계 교직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총장이나 관계 교직원에게 대학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총장에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항이나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과 결산
2. 대학(원), 학과(부) 및 전공의 설치나 폐지
3. 처·국, 대학(원) 행정실 및 지원·부속시설의 설치나 폐지. 다만, 산학협력단 소관 지원·부속시설은 제외한다.
4. 대학 장기발전계획
5.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4항에 관한 사항
6.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7. 의장이나 재직 대학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 이외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직원, 학생 그리고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회의 결과를 교내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제11조(심의 결과 알림)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알린다.

②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의 반영 내용을 의장에게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심의기간) ① 총장은 특정 의안에 관하여 의장과 협의하여 심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간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학평의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평의원회의 회의 일시
2. 대학평의원회의 회의 의안
3. 대학평의원회의 출석과 자료 제출
4.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의 대학평의원회 운영

⑤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로 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직원) 대학평의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15조(예산지원)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수당 등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대학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규칙 제1357호, 2005. 11.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396호, 2006. 4.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534호, 2008.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666호, 2008. 1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시행 2013.6.12] [학교규정 제1922호, 2013.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20조제2항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육, 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4. 대학, 대학원 또는 학부, 학과 및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칙,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평의원회는 이사회가 정관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 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원 44명
 2.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교원 3명
 3. 직원 가운데에서 선출한 대표 3명
- ② 선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대학, 대학원별 평의원 정수는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④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⑤ 총장, 이사, 부총장, 대학(원)의 학(원)장·부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부학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부원장, 처·국·본부의 처장·국장·본부장·

부처장·실장·부분부장, 대학신문사주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부이사장·상임이사, 서울대학교병원장·부원장·산하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부원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6.12.]

제4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선출 또는 위촉되는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후임자가 선출 또는 위촉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장 및 부의장)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한 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승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평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 ① 평의원은 평의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평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③ 평의원은 대학 전반의 정책과 관련된 사안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의장에게 심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거나 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2.]

제7조(직무대행) 의장 등을 선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출을 할 때
3.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제8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학기 2회 열리며, 평의원회의 임시회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린다.

- ② 서울대학교의 부총장, 처장, 실장, 국장, 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평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평의회는 주요보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학운영의 현황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평의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 ⑤ 평의회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 각 한 명을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시) 평의회는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이사회 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평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② 평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운영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평의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③ 평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평의원이 아닌 약간 명을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사무국) 평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3.6.12.]

제12조(의사록 등) 평의회의 의사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장 및 평의원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칙) 평의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1922호, 2013.6.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남대학교평의회규정

제정2002.4.26.제822호
개정2007.8.1.제1106호
개정2009.7.30.제1205호
개정2013.4.25. 제1380호

제1조 (명칭) 본회는 “전남대학교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평의회는 학칙 제14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진리·창조·봉사의 본 대학교 교육 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평의회는 전남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각 단과대학, 전문대학원 및 직할학부의 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 총장이 지명하는 평의원 및 직원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평의원은 학(원)장 및 처장을 제외한 교수로 하며, 각 단과대학, 전문대학원 및 직할학부의 평의원 수는 재직교수 50명당 1명씩으로 하되 재직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③ 총장이 지명하는 평의원은 처장 2인으로 하며, 직원 평의원은 4인으로 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총장이 지명하는 평의원 제외) 임기중 궐위된 평의원의 후임 평의원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①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학부(과) 및 부설기관(시설)의 설치와 폐지
2. 학칙의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
4. 총·학(원)장의 선출 방법
5. 대학의 주요 발전계획, 시설 및 환경
6. 교권과 후생복지
7. 주요 보직자(부총장, 대학원장, 처장)에 대한 임명동의
8. 총장, 평의회 의장, 재직 평의원의 1/3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회는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자료 제출 및 관계 교직원의 출

석요구 등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③평의원회는 대학 구성원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3인 이상의 평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사안을 법령, 학칙 및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④평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간접연구경비회계, 발전기금회계, 생활/신용협동조합회계 등의 운영 계획과 시행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⑤재정복지위원회는 기성회계 프로그램 간 예산전용과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⑥평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직원 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평의원회 활동에 관련된 자료의 제시 요구에 총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평의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평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임기중 임원이 교체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의 장 1인
2. 부의장 1인
3. 감 사 2인
4. 기획이사, 서기이사, 총무이사 각 1인

제6조 (임원선출) ①교수협의회 회장인 평의원을 본회의에서 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임한다.

②부의장 및 감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③전항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기획이사, 서기이사, 총무이사는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⑤임원이 결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직무) ①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평의원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의장은 업무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③감사는 평의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매 학년초 정기회의 때

이를 보고한다.

④기획이사는 회무를 기획조정하고 의장을 보좌한다.

⑤서기이사는 회의록의 정리, 보관 및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⑥총무이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회계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회) 평의원회에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기획이사, 서기이사, 총무이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교수협의회 부회장 1인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의안 상정에 관한 사항
3. 총장이 의뢰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
4. 기타 평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사항) ①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평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를 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②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무 및 학생 위원회
 - 가.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 나. 교직원 인사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2. 재정 및 복지위원회
 -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대학구성원의 복지 및 권익에 관한 사항
 - 다. 각종 회계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획 및 시설 환경 위원회

가. 대학발전의 기본계획

나. 총·학장의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다. 대학(원), 학부(과) 및 부속기관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라.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마. 타 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학·연구 및 조정위원회

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

나.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관한 사항

다. 교내 구성원 이견 조정 및 현안 문제

제 11조 (특별위원회) ①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 12조 (전문위원) ①각 상임위원회에 평의원이 아닌 자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약간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고,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회의에 참석, 발언 할 수 있다.

제 13조 (업무조정위원회) ①평의원회 업무 협의, 각 위원회의 협조체제 구축, 평의원회 활동의 홍보와 대학 구성원의 여론 조사활동을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업무조정위원회는 부의장, 기획이사, 서기이사, 총무이사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 14조 (회의) ①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2 회 매학기 초에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3인 이상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본회의의 의결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학칙의 변경은 재적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5조 (의안발의) ①3인이상의 평의원 또는 총장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의 발의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재심의 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총장은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유서를 붙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7조 (평의원 교체) ①각 대학 교수회의는 재직교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이상의 의결로 해당 평의원을 불신임 교체할 수 있다.

②평의원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혹은 평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출 대학장에게 당해 평의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본교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9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1/3이상의 발의와 재적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2002. 4. 26.)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의 평의원회 구성 및 활동은 1987년 8월 25일의 평의원회 규정을 승계한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8. 1.)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30.)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5>

전남대학교 평의원회규정시행세칙

제정 1987. 10. 20.	개정 1989. 8. 29.	개정 1989. 10. 31.	개정 1995. 8. 21.
개정 2002. 8. 19.	개정 2009. 7. 30.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의원선출시기) ① 평의원은 임기 종료 7일 전까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평의원이 결위된 때에는 의장은 7일 이내에 당해 대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평의원의 사임) ①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직서는 본회의의 결의를 거쳐 이를 수리한다. 다만, 본회의의 결의를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제4조(공청회등)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교수, 전 문가, 기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본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의사일정을 포함한 안건을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사일정의 변경은 본회의의 결의를 거친다.

제7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안건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심의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본회의의 결결로서 재심의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8조 (평의원의 의견 제출) 평의원은 소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개진 할수 있다.

제9조(수정동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평의원 2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지보고) 의장은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총장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사항인 경우 이를 서면 또는 교내매체에 공고하여 전체 교수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 칙(1987. 10. 20.)

이 세칙은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1989. 8. 29.)

이 세칙은 개정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1989. 10. 31.)

이 세칙은 개정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1995. 8. 21.)

이 세칙은 개정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02. 8. 19.)

이 세칙은 개정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09. 7. 30.)

이 세칙은 개정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대학교 평의회 규정

제	정	2004.	8.	10.	규칙 제 611호
개	정	2004.	10.	8.	규칙 제 620호
개	정	2006.	8.	1.	규칙 제 680호
개	정	2010.	8.	9.	규칙 제 884호
개	정	2010.	8.	9.	규칙 제 899호
개	정	2011.	9.	27.	규칙 제 976호
개	정	2012.	11.	9.	규칙 제1035호
개	정	2013.	5.	27.	규칙 제111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학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평의회 (이하 “평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평의회는 제주대학교 교수회 (이하 “교수회”라 한다) 및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평의회는 교수회 회장과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는 2인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제4조 (선출직 평의원의 자격) ① 선출직 평의원의 자격은 선출당시 본교에 2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으로 하되, 대학(원)장 및 처장 등 학무회 운영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이하 “학무위원”이라 한다)은 선출직 평의원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1. 학무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2. 휴직, 정직,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파견)의 경우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 장 1인
2. 부의장 2인

제6조 (임원의 선출 등) ① 평의회 의장은 교수회 회장이 맡는다.

- ② 부의장 1인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른 부의장 1인은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되, 호선된 부의장이 수석부의장이 된다.
- ③ 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으며, 수석부의장이 교수회 부회장이 된다.
- ④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 3 장 평의원

제7조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제8조 (평의원 수 및 선출방법) ①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원) 및 직할 학부 교수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교육대학원과 통역번역대학원은 통합하여 선출한다.

1. 재직교수 20인 미만은 1인
2. 재직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2인
3. 재직교수 50인 이상 80인 미만은 3인
4. 재직교수 80인 이상 110인 미만은 4인
5. 재직교수 110인 이상은 5인

② 선출된 평의원 중 여성의원 수가 100분의 20이 되지 아니할 때는 미달되는 인원수에 대해서 2인 이내의 여성의원을 교수회장이 여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③ 평의회 의장(교수회 회장)은 선출직 평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평의원의 선출시기 및 임명추천) ① 평의회 의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선출을 의뢰해야 하며,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이후 10일 이내에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평의회 의장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장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후임 평의원 선출을 의뢰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이후 1주일 이내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장은 평의회 의장에게 평의원 선출결과를 선출 즉시 서면 통고하여야 하며, 평의회 의장은 통고 받은 즉시 총장에게 평의원 임명을 추천해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0조 (회의) ① 평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 또는 평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 (심의사항)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대학발전계획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대학 또는 부속기관, 학부 (학과), 강좌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다.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라. 교직원 인사의 기본방침 및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 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바. 교직원의 처우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사. 평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아. 기타 총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권에 관한 사항

나. 교수회의 조직과 규정,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총장임용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마. 평의원 1/4인 이상 또는 교수회 위원회의 발의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대학 구성원 또는 각 기관에서 소청한 사항

제 12조 (심의사항 통보) ① 의장은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대학운영에 반영한다.

② 의장은 회의결과를 각 단과대학에 통보한다.

제 13조 (재심요청) ① 총장은 평의회의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심의 안은 확정된다.

제 14조 (관계자의 출석 등) ① 평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의회 의장은 제11조 제1호 마목에 대한 안건 심의 시 총학생회장파 총대의원회 의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5조 (위원회) ① 평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사무 분과위원회, 규정심의분과위원회, 예결산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6조 (세칙제정권) 평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등

제 17조 (재정) 평의회의 예산은 학교예산에서 따로 정한다.

제 18조 (간사) ① 평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처 기획평가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19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1/3이상의 발의 또는 총장의 요구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2004. 8. 10. 규칙 제611호)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당시 종전의 제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선출직 평의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4. 10. 8. 규칙 제6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북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정 1988. 3. 8. 규칙 제189호
제1차 개정 2003. 5. 27. 규칙 제619호
제2차 개정 2012. 7. 20. 규칙 제10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법 제117조 및 학칙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충북대학교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평의원의 수는 30인 이상 40인 이내로 하되, 보직교수(각 대학원장, 단과대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에 저명한 인사(본교 교원은 제외한다)와 평교수(보직교수를 제외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5. 27, 2012. 7. 20.)

② 보직교수 및 교육에 저명한 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평의원은 교무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수는 평의원 전원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③ 평교수 중에서 위촉하는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별 교수회에서 선출한 교수로 한다.

제3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직교수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제5조(회의) ① 평의원회는 총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사항) 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부·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폐지·운영과 그 교원조직에 관한 사항

3.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장학금 기타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7조(간사와 서기) ①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무처 교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3. 5. 27.)

제8조(의원의 대우) 평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평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의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제정 1988. 3. 8. 규칙 제189호)

이 규정은 198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5. 27. 규칙 제6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7. 20. 규칙 제10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대학교 대학평의회규정

- 개정 [2011-09-01]
- 개정 [2010-11-05]
- 개정 [2010-02-10]
- 개정 [2008-12-01]
- 개정 [2007-05-25]
- 개정 [2006-04-05]
- 개정 [2004-11-24]
- 제정 [2003-09-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대학교학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대학평의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25)

제2조 (기능) ① 대학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4.11.24.)

1. 대학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장 또는 평의원 중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대학평의원의 규정에 제정 및 개정
- ③ 그 밖에 대학평의회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제3조 (구성) 대학평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수 평의원은 교수회 회장, 부회장 3명, 교수회 사무국장, 교수회 정책국장, 선출 교수 평의원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6.4.5, 2008.12.1, 2010.11.5)
- ② 선출 교수 평의원 수는 단과대학별 2명을 기본으로 하며, 각각 교수회 회원 50명 초과시마다 1명을 추가한다. 다만, 1개 단과대학 선출 평의원수는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단과대학 선출 평의원은 본교 재직기간 5년 이상인 평교수 가운데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직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없는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평교수 중 1명을 선출한다. 다만, 학부장, 학과장과 부속기관이 아닌 연구소의 소장은 평교수로 본다.

- ④ 직원 평의원은 직원협의회(사무관 이상)대표 1명,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표 2명, 대학노동조합 및 조교협의회 대표 각 1명으로 구성한다.
- ⑤ 학생 평의원은 학부생 대표 3명과 대학원생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5.25)

제4조 (임원) ① 본 회의에는 의장, 부의장 3명, 사무국장, 정책국장을 둔다.(개정 2006.4.5)

- ② 본 회의 의장은 교수회 회장으로 한다.
- ③ 부의장은 교수회 부회장으로 한다.
- ④ 사무국장은 교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 ⑤ 정책국장은 교수회 정책국장으로 한다.(신설 2006.4.5)
- ⑥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둘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중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총장은 의장에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성립 및 의결) ① 회의는 재석 평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출장, 강의, 진료중인 평의원은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본회의의 의결은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은 재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재석 평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및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0.2.10)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평의원 중 과반수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총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① 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의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3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평의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③본 회의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등) ①의장은 안전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대학발전을 위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 총장은 그 결과를 대학평의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의무) ①단과대학 선출 평의원은 그 활동내용을 해당 단과대학 교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의장은 평의원의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 출석상황을 적절한 매체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면책 및 소환) 단과대학 선출 평의원은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를 대표하는 책임을 진다. 본 회의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의 소환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의의 공개) ①의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 학생,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 ②방청인은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의장은 본 회의결과를 교내 신문이나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세부사항) 본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3. 9. 24. 규정 제68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4.5. 규정 제79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5.25. 규정 제83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08.12.1. 규정 제88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0.2.10. 규정 제96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0.11.5. 규정 제103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1. 9. 1. 규정 제116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운영규정

제정일 : 1988. 7. 6.
개정일 : 1990. 3. 14.
개정일 : 1999. 7. 30.
개정일 : 2003. 11. 12.
개정일 : 2004. 9. 8.
개정일 : 2005. 6. 22.
개정일 : 2006. 2. 15.
개정일 : 2010. 2. 9.
개정일 : 2011.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 회의의 성립 및 의결) ① 의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회의자료를 각 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지정장소에 의사일정 및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회의일시만 통지하고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석 평의원 중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출장, 강의, 진료 중인 평의원은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본회의의 의결은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은 재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재석 평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및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평의원 중 과반수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안전심의) ① 총장이 심의 요청한 안전에 대하여 의장은 안전의 적합성을 고려한 후 이를 심의할 분과위원회에 안전을 배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의장이 배정한 안건에 대하여 자료 검토, 토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심의한 후 이를 본회의에 상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평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의결 결과를 총장에게 통지한 후에는 재심의 할 수 없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대학평의회 의장, 부의장, 각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정책국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부된 안건을 충분히 심의한 후 이를 본 회의에 상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재직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매 학년초 또는 결원이 있을 때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무학생분과위원회는 대학평의회규정 제2조 ①항에 정한 심의·의결사항 중 교무처, 학생처, 입학관리본부, 대학원 및 관련 부속기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2. 기획연구분과위원회는 대학평의회규정 제2조 ①항에 정한 심의·의결사항 중 기획처, 산학협력단, 대외협력본부, 도서관, 교육정보전산원 및 관련 부속기관·연구소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재정사무분과위원회는 대학평의회규정 제2조 ①항에 정한 심의·의결사항 중 사무국에 해당하는 사항 및 기타 재정·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교무학생분과위원회는 "교학분과위원회", 기획연구분과위원회는 "기획분과위원회", 재정사무분과위원회는 "재정분과위원회"로 각각 약칭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정 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며, 이 때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필요한 경우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약간 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① 주요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위촉한다.

제8조(본 회의의 심의, 의결) ① 분과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해당 분과위원장의 심의 결과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심의·의결한다.

② 의장은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있을 때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본 회의의 표결) ①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며, 의장의 표결선포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은 거수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할 수 있다.

③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전원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뜻을 선포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 표결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통지) 의장은 의결 결과를 3일 이내에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의장은 다음 사항이 기재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가. 회의일시

나. 출석 및 결석의원 성명

다. 출석참고인 직, 성명

라. 제반보고 사항

마. 안건토의 내용

1) 회의에 부의된 의안 제목

2) 토의의 주요내용

바. 의제가 된 동의와 동의자의 설명

사. 표결결과와 의결 사항

아.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록에는 분과위원장 3인이 서명한다.

③ 회의록은 차기 회의시에 회람하여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은 평의원회의 결의로 정정한다.

④ 회의록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본회의 진행과정을 녹음하여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의 의결 전에 결의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의된 것으로 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